

정책연구과제 2006-05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장 명 립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6-05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장명립(육아정책개발센터)
공동연구자 : 나 정(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육아정책개발센터)
김은영(육아정책개발센터)
박수연(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협력관 : 박정호(유아교육지원과)

교육인적자원부

연구 자문위원

성명	소속	직위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5
II. 우리나라 육아지원 제도 및 재정	9
1. 육아비용지원 제도	11
2. 육아지원 재정	20
3. 특성 및 시사점	38
III.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 및 문제점	45
1.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47
2.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4
IV. 시·도별 유아교육·보육 지원 현황	63
1. 시·도별 보육 예산지원 현황 및 근거	65
2. 시·도별 유아교육 예산지원 현황 및 근거	77
3. 지자체의 유아교육 지원 우수사례 분석	84
4. 지자체의 유아교육 지원 특성 및 문제점	86
V.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 방안	91
1.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93
2.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96
3. 유아교육 지원사업의 선정 및 활성화	100
부록	103
<부록 1> 시·도별 유아교육 지원 사례	
<부록 2> 교육경비조례 및 유아교육지원 조례(예)	
<부록 3> 보육조례(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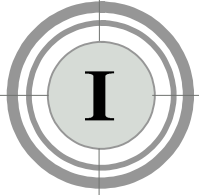
표 목 차

<표 II-1-1>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21
<표 II-1-2> 소득수준별·연도별 재정지원 계획(안)	41
<표 II-1-3> 보육료 지원 아동 2003~2005	5 1
<표 II-1-4> 교육비 지원 아동 2004~2005	7 1
<표 II-1-5>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2004~2006	7 1
<표 II-1-6> 보육교육비 지원체제: 2006	81
<표 II-2-1>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2000~2006	0 2
<표 II-2-2>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1~2006	1 2
<표 II-2-3>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6	12
<표 II-2-4> 보육 예산: 2002~2006	1 2
<표 II-2-5> 유아교육 예산 2002~2006	2 2
<표 II-2-6>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유아교육 예산 내역 2004~2005	2 2
<표 II-2-7> 농어민 양육비 지원 예산 2004~2006	3 2
<표 II-2-8> 보육, 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	42
<표 II-2-9> 2005년 총 육아지원 보육, 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 GDP 대비 비율	25
<표 II-2-10> 보육비용의 국가와 보호자의 분담 2002~2005	6 2
<표 II-2-11> 교육비용의 국가와 보호자의 분담 2005	6 2
<표 II-2-12> 육아비용의 국가와 보호자의 분담 2005	7 2
<표 II-2-13> 시설유형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분담(2006년 기준)	9 2
<표 II-2-14> 시설유형별 아동 1인당 교육비 지원액	03
<표 II-2-15> 유치원 원아 1인당 연간 교육비(2003년 세출 기준)	0 3
<표 II-2-16> 보육 및 유아교육 국고지원 사업비 중앙 및 지방 분담 비율	13
<표 II-2-17>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6	2 3
<표 II-2-18> 시·도별 보육예산 중앙-지방 분담 현황: 2006	3 3
<표 II-2-19> 시·도별 보육사업 총예산 및 아동 1인당 예산 2004, 2005	4 3
<표 II-2-20> 읍면지역 시설유형별 보육료	53
<표 II-2-21> 시·도별 유치원 총예산 및 유아 1인당 예산 2004~2006	6 3
<표 II-2-22> 시·도별 공립 및 사립 유치원 총예산 및 유아 1인당 예산 2005	7 3
<표 II-3-1> 2005년도 시·도별 1인당 유아교육비·보육비 비교	9 3
<표 II-3-2> 2005년 보육 재정 배분 분석	04

〈표 II-3-3〉 2005년 유치원 지원 재정 배분 분석	14
〈표 II-3-4〉 2005년 공립유치원 지원 재정 배분 분석	24
〈표 II-3-5〉 2005년 사립유치원 지원 재정 배분 분석	34
〈표 IV-1-1〉 16개 시도별 보육 관련 특수시책사업 현황(2006년도)	5 6
〈표 IV-1-2〉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예산 지원 현황(2006년도)	1 7
〈표 IV-1-3〉 시도별 보육 관련 원아1인당 지원액(2006년도)	2 7
〈표 IV-1-4〉 시도별 보육조례 제정 현황	27
〈표 IV-2-1〉 시도별 유아교육 관련 원아 1인당 지원액(2006년도)	2 8
〈표 IV-2-2〉 시도별 유아교육 지원 근거(2006년도)	3 8
〈표 IV-3-1〉 시도별 유아교육 지원 우수사례 종합표	58
〈표 IV-4-1〉 유아교육 지원 사업 종류	88
〈표 V-3-1〉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종료 시간(2004)	111
〈표 V-3-2〉 유치원 방학기간(2005)	111
〈표 V-3-3〉 유치원 종일반 운영 현황(2006)	211

그림 목 차

[그림 I-1-1] 연구 추진 절차	7
[그림 II-2-1] 육아지원 예산의 GDP 대비 비율	5 2
[그림 II-2-2] 유아교육·보육 재정 구성도	8 2
[그림 II-2-3] 2005년도 시도 재정 자립도 및 교육·보육 재정	9 3
[그림 V-2-1]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연계협력 체제 모형	0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5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1.08 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효율적인 육아지원 정책 마련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의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는 하나 그중에서도 육아서비스 취약과 자녀의 양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중단 및 기피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1).

최근 정부는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범정부적 유아교육 및 보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예산의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별 재원확보 대책도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즉,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지자체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취학전 유아교육·보육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및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의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 정부의 지원에 대한 대응투자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투자함으로써 지역내 모든 인적자원을 성공적으로 육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교육기회 불평등을 지양할 수 있는 교육차원의 사회안전망(social security networks) 구축작업인 동시에 교육복지제도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자체별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는 매우 상이하며, 대부분 보육시설에만 국한하여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유아교육·보육 정책 수립의 가장 중요한 가치판단 기준으로 형평성과 균등성이 거론된다. 이는 유아가 어떤 기관에 다니던지 관계없이 유아의 인권(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유치원이건 보육시설이건 또 국공립이건 사립이건 다니는 기관에 관계없이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유아가 평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경기도 사례).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경쟁력 향상 및 타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경상북도 사례).

2006년 12월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광역자치단체도 학교에 교육경비를 직접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즉, 시도지사가 유·초·중등학교 대해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일반자치기관의 유치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육아지원 제도 및 재정, 시도별 유아교육·보육 예산지원 현황 및 근거를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가.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제도 및 재정

- 1) 육아비용지원 제도
- 2) 육아지원 재정

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 및 문제점

- 1)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
- 2)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 법제의 문제점

다. 시도별 유아교육·보육 지원 현황 및 근거

- 1) 시도별 보육 예산지원 현황 및 근거
- 2) 시도별 유아교육 예산지원 현황 및 근거
- 3) 지자체의 유아교육 지원 우수사례 분석
- 4) 지자체의 유아교육 지원 특성 및 문제점

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사업 선정

- 1) 유아교육 지원사업 선정의 배경
- 2) 유아교육 지원사업 선정

- 마.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 방안 모색
 - 1)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 2)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의 협력체제 구축
 - 3) 유아교육 지원사업 선정 및 활성화

3. 연구 방법

가.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 분석

- 1) 유아교육의 성격 및 종일반 프로그램 특성
- 2)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제도 및 재정
- 3) 선진국 지자체의 유아교육보육 지원 모범 사례 분석

나.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분석

- 1)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
- 2) 시도별 유아교육보육 지원 조례 등

다. 시도별 유아교육보육 지원 현황 자료 수합분석

- 1) 시도별 보육 예산지원 현황
- 1) 시도별 유아교육 예산지원 현황
- 3) 지자체의 유아교육 지원 우수사례 집중 분석

라.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지자체의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실제적 방안 도출을 위하여 교육행
재정 및 법규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유아교육 지원 방안 모
색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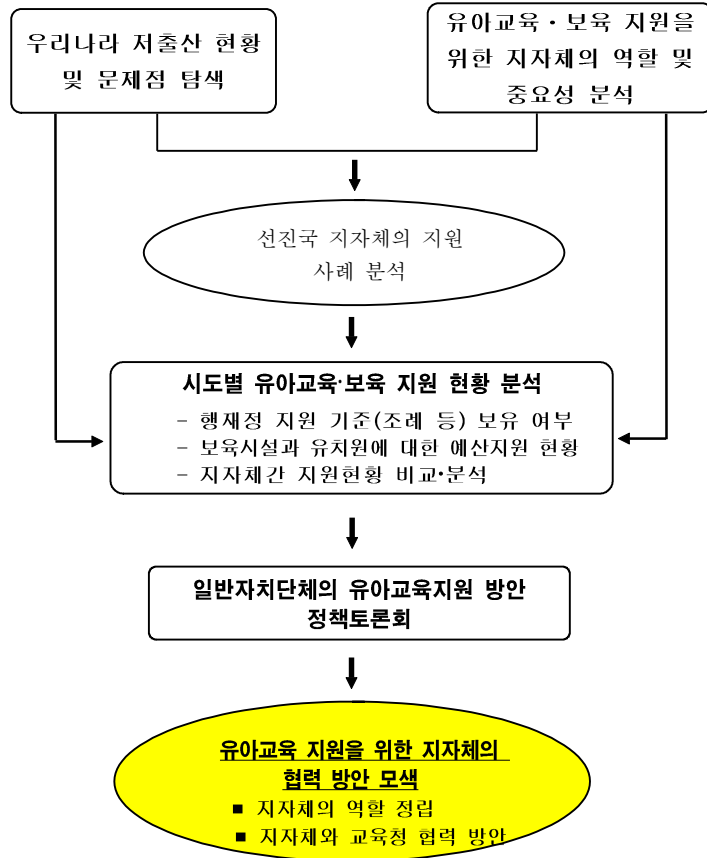
- 교육행재정 분야: 김홍주(한국교육개발원), 송기창(숙명여대)
- 법 분야 :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허종렬(서울교대)

마. 일반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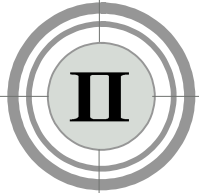
- 1) 시기 : 2006년 11월
- 2) 대상 : 중앙부처, 지자체 및 교육청 관계자, 학계 전문가, 단체 및 현장 관

계자 등

- 3)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 4) 발표 및 토론 주제
 - 발표 1 :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 방안
 - 토론
 -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그림 1-1-1] 연구 추진 절차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제도 및 재정

1. 육아비용지원 제도
2. 육아지원 재정
3. 특성 및 시사점

제2장에서는 정부의 육아비용 지원 제도와 재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육아지원사업은 설치비나 개보수비 지원, 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료나 교육비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치비 지원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인 반면에 시설운영비와 아동 보육·교육비 지원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비용 지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 운영비 지원은 시설유형에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 중심의 시설별 지원과 보육료 지원으로 이뤄져 있다. 제1절에서는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자 하였고 제2절에서는 재정의 규모나 정부간 분담, 정부-부모간 분담을 살펴보고 총 비용, 정부 지원 부모 부담의 시설유형별 또는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육아비용지원 제도

가. 보육비용 지원

정부의 보육사업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기능보강, 시설별 인건비 지원, 보육료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치비 지원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인 반면에 시설별 지원과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종전의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심이었으나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시설유형과 무관하게 다양한 형태의 비용 보조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실제로 프로그램별 지원, 기본보조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실시되고 있다.

1) 보육시설별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구분된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체로 유아교사는 인건비의 30%, 영아전담교사는 80%를 지원하고¹⁾ 추가지원으로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보육시설에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이외 차량운영비를 개소당 월 20만원(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1) 2004년 이전에는 각각 45%, 90%에서 2005년부터 축소 조정되었음.

〈표 II-1-1〉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구 분		지원내용
국공립 및 법인 등 시설	40인 이상 시설	- 원장 인건비 80%, 보육교사 인건비 30%(영아반 교사 80%) - 추가지원: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 포함)
	40인 미만 시설	- 원장 인건비 지원 없음, 보육교사 인건비 30%(영아반 교사 80%)
	시간연장, 휴일, 방과후 보육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별도 채용 시) - 휴일보육 5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5만원 - 방과후 16~20명 보육 시 인건비 50%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3명 기준 인건비 90% 지원
	장애아 통합 시설	- 장애아반 편성 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80% 지원 - 특수교사 수당
영아전담시설 (2004년 이전 지정 및 국고보조 신축비 지원)		- 원장(18명 이상), 보육교사 인건비 80% - 취사부 인건비 100% - 농어촌 시설은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장애아전담시설 (시·도 지사 지정)		- 원장(6개반 이상), 보육교사 인건비 80% - 취사부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 특수교사 수당 - 치료사 아동 9인당 1명 인건비 100% 지원
민간가정 보육시설	일반보육시설	- 영아, 장애아반 지원 기준에 따라 기본보조금 지원 - 교재교구비: 개소당 연 500~1,200천원 - 농어촌 소재 차량운영비: 월 20만원 지원
	장애아 통합 시설	- 장애아반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시간연장 시설	-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방과후 보육시설	- 방과후 20명 이상 보육 시 인건비 50%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인건비 90% 지원
직장보육시설		- 교재교구비: 개소당 연 500~1,200천원

주: 지원율은 국고(서울: 20%, 지방: 50%), 지방비(서울: 80%, 지방: 50%)임.

자료: 여성가족부(2006). 보육사업안내.

프로그램별 지원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보육이 해당된다. 영아보육에 대한 지원으로 2004년 이전에 지정된 전담시설에는 원장과 교사 인건비 이외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받고, 농어촌 시설의 경우에는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장애아보육시설은 원장(6개반 이상)과 보육교사 인건비 80%, 취사부 인건비 100%,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치료사 아동 9인당 1명 인건비 100%, 특수교사 수당 등을 지원받는다. 장애아 통합보육을 할 경우, 인건비 지원시설은 장애아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특수교사 수당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한편 민간 및 가정 시설은 장애아반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경우, 정부 지원시설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민간 및 가정 시설은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휴일보육은 정부 지원시설에만 지정하고 있는데, 휴일보육 5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시 5만원을 지원한다. 방과후보육시설²⁾에 대해서는 아동 16~20명 보육 시 교사 인건비 50%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방과후보육은 아동 3명 기준으로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 이는 정부 지원시설이나 민간가정시설 모두 동일하다.

이외 민간 일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를 개소당 연간 50~120만원 지원하고 있다. 교재교구비는 1998년부터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직장보육시설에도 지원한다. 농어촌 소재 시설에는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 지원한다.

한편으로 세제지원으로 지방세법시행령³⁾에 의하여 보육시설 운영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소지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처리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2) 민간시설 기본보조금

현재 정부는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과는 별도로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영아에 대하여 연령별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영아에 대한 지원은 2002년 하반기에 영아 10명 이상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에 시설별로 40만원⁴⁾을 처음 지원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 후 2003년에 민간보육시설로 확대하였고 2004년에 반별로, 2005년에 아동별로 전환하여 지원 수준을 다소 확대하였다. 2006년부터는 기본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하였다. 동시에 부모 부담을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낮추어 통일하였다. 유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보조금 확대를 통하여 민간시설의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2010년까지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맞추어 간다는 방침이다.

2) 2004년 3월 1일 이후에는 지원을 중단하였음.

3) 제7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26조 제1항, 제136조 제194조 6 제2항 제207조임

4) 자부담 10%가 포함된 것으로 실제로는 36만원임.

3) 보육료 차등 지원

정부는 특정 기준의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육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보육료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회적 연대성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보육료 지원은 1991년 시설운영지원에 탁아급식비를 포함하여 지원한 이래 1992~2003년도에는 차상위 계층(기초수급자의 120% 수준 소득자)까지 지원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 점차 그 대상과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월 평균소득은 소득 이외에도 재산상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⁵⁾

대통령자문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가 2004년 6월 제46차 국정과제보고회에서 보고한 제1차 육아지원방안 보고 시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까지 차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에 발표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안이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130%까지로 확대하였다.

〈표 11-1-2〉 소득수준별·연도별 재정지원 계획(안)

단위: %

구분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지원비율							
		2003년 이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층	법정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층	차상위 계층	40	60	80	100	100	100	100	100
3층	50%까지	-	40	60	70	80	80	80	80
	60%까지	-	-	30	40	50	60	60	60
4층	70%까지	-	-	-	-	20	30	30	30
	100%까지	-	-	-	-	-	-	30	30
5층	130%까지	-	-	-	-	-	-	30	30
6층	130%까지	-	-	-	-	-	-	-	-

자료: 여성가족부(2006),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안: 세씩 플랜.

5)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일반재산(환산율 4.17%), 금융재산(환산율 6.25%), '승용차 등'(환산율 100%)이 포함되는데, 2005년에는 10년 미만 2000cc 이상 승용차에 대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였는데, 2006년에는 7년 미만인 2000cc 차량에 대해서만 100%를 적용하고,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4.17%를 적용하여 차량의 배기량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가구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였음.

초등학교 취학직전 연령인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1999년 하반기부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⁶⁾ 2006년 현재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90%⁷⁾이하의 가구까지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05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비용의 20%를 지원한다. 장애아 무상보육은 2003년부터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료 지원 확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영유아보육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2년에 3만 4천명이었으나 2003년 12월 기준으로 21만명, 2004년 28만명, 2005년 43만 8천명으로 보육아동의 44.2%에 달한다. 만 5세 및 만 6세 이상 아동은 각각 48.6%, 60.3%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표 II-1-3〉 보육료 지원 아동: 2003~2005

단위: 명, %

구 분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세 이상	계
2005년								
전체 보육 아동수(A)	33,647	89,403	179,301	223,628	219,954	195,455	48,002	989,390
보육료 지원 아동수(B)	14,013	37,681	71,357	93,567	97,037	95,000	28,949	437,604
보육료 지원 비율(B/A)	41.6	42.1	39.8	41.8	44.1	48.6	60.3	44.2
2004년								
전체 보육 아동수(A)	21,445	73,686	167,785	230,516	213,679	183,917	39,224	930,252
보육료 지원 아동수(B)	4,718	18,719	37,335	56,159	60,208	82,877	19,866	279,882
보육료 지원비율(B/A)	22.0	25.4	22.3	24.4	28.2	45.1	50.6	30.1
2003년								
전체 보육아동수(A)	14,686	66,901	159,972	213,557	201,303	172,225	29,701	858,345
보육료 지원아동수(B)	2,626	12,988	27,824	41,235	43,447	68,059	14,434	210,613
보육료 지원비율(B/A)	17.9	19.4	17.4	19.3	21.6	39.5	48.6	24.5

자료: 여성가족부(각 연도), 보육통계.

6) 1999~2001년도는 농어촌 지역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2002년 전국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 200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까지 지원,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수준까지 지원(도시/농촌 지원단가 일원화), 2006년 농촌 100%, 도시 80% 수준까지 지원

7) 2006년 현재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90%는 318만원이고, 월평균소득 100%는 353만원임

나. 유아교육비 지원 제도

1) 시설별 지원

유아교육 지원정책은 유치원의 설립배경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국공립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교사 인건비는 정부가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유치원에 지원하지 않는다. 운영비와 시설비도 지역 교육청에서 국공립유치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2004년부터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종일반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이는 수면실, 주방 및 위생시설, 안전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당 500~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며 2004년에는 126개원, 2005년에는 1,416개원을 지원하였으며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통학버스 100대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농어촌에 거주하며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원당 약 1백만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인구 30만명 이하 지역의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을 지원한다.

2) 교육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 9월부터 정부의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부터 취학직전 1년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⁸⁾ 2004년부터는 유치원 교육비 지원대상이 현행 저소득층 만 5세아에서 만 3, 4세로 확대되어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 교육비를 차등 지원하게 되었다.

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확대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에는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대상이 전체 아동의 25.7%인 6만 3천명이었고, 만 3, 4세 아동의 8.5%인 2만 5천명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였다. 2005년에는 만 5세아 8만 6천명, 만 3, 4세아 약 5만 7천명이 지원 대상이었다. 2006년에는 만 3, 4세아 15만 5천명, 만 5세아 14만 7천명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8) 이는 보육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표 II-1-4〉 교육비 지원 아동: 2004~2005

구 분	단위: 명, %		
	만 3, 4세	만 5세	계
2005년			
전체 취원아 수 (A)	289,816	251,789	541,603
교육비 지원 아동수 (B)	56,970	86,851	143,821
교육비 지원 비율 (B/A)	19.7	34.5	26.6
2004년			
전체 취원아 수 (A)	296,271	245,442	541,713
교육비 지원 아동수 (B)	25,155	63,003	88,158
교육비 지원 비율 (B/A)	8.5	25.7	16.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각 연도), 유치원 현황.

다. 농어민 자녀 지원

농림부에서는 2004년부터 농어민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⁹⁾ 이 제도는 당시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지소유규모 1.5ha 미만의 농어업인에 대한 부가적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¹⁰⁾ 2005년에 사업대상 농지소유규모 기준을 2ha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2006년에는 다시 5ha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지원 금액은 5세 미만아는 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이고, 5세아는 100%이다. 지원방식은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시·군·구 농정부서에서는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보육시설에 수납하게 한다.

〈표 II-1-5〉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2004~2006

구 분	단위: 명		
	2004년	2005년	2006년
농지소유기준	1.5ha	2.0ha	5.0ha
아동수	27,000	31,109	27,286

자료: 농림부, 내부자료.

9) 농림부는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에 일조하고자 2004년부터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작하게 되었음. 농어촌지역 기준은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고, 농가 기준은 농업인이 주민등록상 생계와 경영을 같이 하는 가구임.

10)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기준) 농지소유면적 15,000㎡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의 0~5세 아동,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조카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임.

3개 부처에서 실시하는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비교하면 <표 II-1-6>과 같다. 0~4세 보육의 경우 5ha 이상 농지소유 농가의 자녀에게는 도시 거주 아동과 동일하게 도시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법정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게는 보육료의 100%, 차차상위계층(도시평균소득 50% 미만)은 70%, 도시평균소득 70% 미만 계층은 40%를 지원한다. 5ha 미만 농지소유 농가의 자녀에게는 농림부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있다. 법정저소득층과 차상위, 차차상위계층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며, 도시평균소득 70% 미만 계층에게는 여성가족부가 40%를 지원하거나 농림부가 50%를 지원한다. 도시평균소득 70% 이상 계층은 농림부가 보육료의 50%를 지원한다. 3~4세 교육의 경우 보육과 같은 비율로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가 지원한다.

〈표 II-1-6〉 보육·교육비 지원체계: 2006

구분	보 육 (0~4세)		교 육 (3~4세)		
	도시, 5ha 이상 농어촌	5ha 미만 농어촌	도시, 5ha 이상 농어촌	5ha 미만 농어촌	
도시평균소득 70%이상	-	50%(농림부)	-	50%(농림부)	
도시평균소득 70%미만	40% (여성가족부)	40% (여성가족부) / 50% (농림부)	40% (교육인적자원부)	40% (교육인적자원부) / 50% (농림부)	50% (농림부)
차차상위 (도시평균소득 50%미만)	70% (여성가족부)	70% (여성가족부)	70% (교육인적자원부)	70% (교육인적자원부)	
차 상 위 (기타저소득층)	100% (여성가족부)	100% (여성가족부)	100% (교육인적자원부)	100% (교육인적자원부)	
수 급 자 (법정저소득층)	100% (여성가족부)	100% (여성가족부)	100% (교육인적자원부)	100% (교육인적자원부)	

한편 농림부에서는 2006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미만 농가 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5세의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수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

료의 25% 수준(단, 5세아는 50%)이다.¹¹⁾

라. 육아비용 세제지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이외에 또 하나의 방식은 조세를 통한 간접적 지원이다. 보육료 조세 지원은 소득에서 소득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Income Deduction)와 조세 납부액에서 보육료를 감면해 주는 세액공제(Tax Credit)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¹²⁾ 우리나라는 현재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보육시설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에 대해 일부 금액을 특별 공제하고 있다. 공제액 한도는 초기에는 연간 100만원이었으며, 2004년부터 200만원으로 한도가 증가되었다. 또한 2004년에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바둑 학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소득액공제제도는 보육료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금액 수준이 매우 낮다. 연 소득 3,000만원 기준으로 배우자와 2명의 자녀 공제 시 200만원 공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각각 1,097,500원, 1,267,500원으로 연 17만원의 차이가 날 뿐이다.¹³⁾ 또한 현재 세율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¹⁴⁾ 면세계층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과표기준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소득 역진성이 있고, 과표기준액은 근로자의 연간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그리고 필요 경비 공제를 제외한 소득으로 실제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므로,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소득이 있는 가구라도 공제액 정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11) 2006년도 월 지원 금액은 0세아 87,500원, 만 1세아 77,000원, 만 2세아 63,500원, 만 3~4세아 39,500원, 만 5세아 79,000원임.
 12) 우리나라 조세제도에서 현재 세액공제는 없음. 외국의 경우 영국에서 이 조세지원 방식을 실시하고 있고, 캐나다 퀘벡 주는 보육료 아동별 보조금 지원을 하는 중앙정부 법에 의하여 이를 실시하는 다른 주와는 달리 아동별 보조금 지원 없이 세액공제제도로서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13) 국세청 홈페이지(http://nta.go.kr)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 이용하여 산출
 14) 2006년 기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은 1천만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는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초과는 1천330만원+8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임.

2. 육아지원 재정

가. 재정 규모 및 정부간 분담

1) 보육 재정

<표 II-2-1>은 2000년 이후 중앙정부의 항목별 보육사업 예산이다

<표 II-2-1>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2000~2006

단위: 백만원

내역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시설 운영 지원	인건비	185,034	206,636	214,643	348,772	452,277	596,865
	차량운영비	910	910	910	1,153	1,291	2,944
	교재교구비	6,331	6,329	6,115	6,040	15,126	22,559
	소계	192,275	213,875	221,668	355,965	468,694	622,368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96,970	130,066	104,856	134,432	212,950	365,848
	5세아 무상보육	11,882	12,508	103,288	108,508	124,538	163,363
	장애아무상보육	-	-	-	10,764	12,049	31,274
	두자녀보육료	-	-	-	-	-	13,447
	소계	108,852	142,574	208,144	253,704	349,536	573,932
보육시설 기능 보강	3,005	3,050	5,175	16,467	52,054	120,291	
인프라 구축 등 기타	1,477	1,432	1,916	2,527	2,000	6,383	
계	305,609	360,976	436,903	627,705	872,284	1,322,974	

주: 국고 지원 사업 예산으로, 시·도 및 시·군·구 특별사업 예산은 제외된 것임.
 자료: 여성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내부자료.

시설 및 아동별 지원 확대로 국고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0년은 3056억원, 2002년은 4369억원, 2004년은 8723억원이며, 2006년은 1조 723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6년도 보육예산 중 40.9%인 7052억원이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고 54.9%인 9460억원이 보육료 지원금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예산 역시 계속 증가하여 2006년 현재 시도 사업비 2248억원, 시·군·구 사업비 896억원이다. 이는 각각 국고 사업비의 13.0%, 5.2%로 모두 18.2%이다. 국고사업 예산 대비 특수사업 비율은 2001년에 비하여 증가된 것이나 2003년과 2004년에 비하여 비율이 많이 감소되었다. 이는 국고지원사업의 확충에 따라 지방정부 분담금이 증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I-2-2>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1~2006

단위: 천원, %

구분	국고사업비 (A)	시·도 특별사업비 (B)	시·군·구 특별사업비 (C)	계	국고사업대비 시·도 특별 사업비(B/A)	국고사업대비 시·군·구 특별 사업비(C/A)
2001년 ¹⁾	360,027	41,755	-	401,782	11.6	-
2002년 ¹⁾	435,517	43,552	-	479,069	10.0	-
2003년 ¹⁾	627,705	156,230	28,081	812,016	24.9	4.5
2004년 ¹⁾	872,285	143,904	45,544	1,061,733	16.5	5.2
2005년 ¹⁾	1,322,974	176,464	96,175	1,595,613	13.3	7.3
2006년 ²⁾	1,723,613	224,842	89,647	2,038,102	13.0	5.2

주: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것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을 합한 것이며, 시·군·구 사업비는 시·군·구 고유의 특별사업비임.

자료: 1) 서문희 외(2006),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여성가족부(2006), 자치단체 특수시책.

<표 II-2-3>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6

단위: 천원(%)

구분	재원			계
	중앙	시·도	시·군·구	
국고지원사업	781,784	470,914.5	470,914.5	1,723,613
시·도 사업	-	112,421	112,421	224,842
시·군·구 사업	-	-	89,647	89,647
계	781,784 (38.4)	583,335.5 (28.6)	672,982.5 (33.0)	2,038,102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06), 자치단체 특수시책 및 예산 개요.

<표 II-2-4> 보육 예산: 2002~2006

단위: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중앙	209,024	297,911	402,114	591,061	781,784(38.4)
지방	270,045	514,105	659,619	1,004,551	1,256,318(61.6)
계	479,069	812,016	1,061,733	1,595,612	2,038,102(100.0)

자료: 여성가족부(2006),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표 II-2-3>, <표 II-2-4>는 2006년도 보육에 소요되는 총 예산을 지방과 중앙 정부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보육예산의 38.4%를 분담하고 시·도가 28.6%, 시·군·구가 33.0%를 분담하고 있다.

2) 유아교육 재정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6년 기준으로 국고 1997억원 지방정부 6864 억 원으로 모두 8860억원이다. 유아교육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2 년은 3348 억원 2004년은 4564억원, 2005년은 6549 억원으로 증가하였다(표 II-2-5 참조).

<표 II-2-5> 유아교육 예산: 2002~2006

단위: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중앙	20,700	25,652	51,285	103,667	199,652(22.5)
지방	314,079	356,835	405,162	551,200	686,359(77.5)
계	334,779	382,487	456,447	654,867	886,011(10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표 II-2-6>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유아교육 예산 내역: 2004~2005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2004년	2005년
	시설 운영 지원	인건비 지원	256,499
종일반지원		1,509	5,000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4,096	4,096
기타 운영비 등		83,059	152,213
소계		345,163(75.6)	465,509(71.1)
저소득층교육비지원		72,290(15.8)	167,128(25.5)
단설유치원설립지원 등 시설비		38,144(8.4)	20,380(3.1)
기타(자료개발, 훈련비 등)		800(0.2)	1,850(0.3)
계		456,447(100.0)	654,867(100.0)

주: 교육인적자원부(각 연도), 내부자료.

국고는 주로 소득계층별 교육비 차등지원금이고 지방정부예산은 주로 국공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이다. 2005년도 유아교육 예산 중 71.1%인 4655 억원은 인건비 지원 등의 시설운영지원이고 25.5%인 1671 억원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다. 2004 년에 비하여 교육비 지원금이 많이 증가하였다(표 II-2-6 참조).

3) 농어민 양육비 지원 예산

농어민 양육비 지원 예산은 2004년 292억원에서 2005년 44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예산은 총 315억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157억원씩을 부담하고 있다. 2006년 예산이 2005년에 비해 줄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수 감소와 보육교육비 차등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른 대상자 감소에 의한 것이다.

<표 II-2-7> 농어민 양육비 지원 예산: 2004~2006

단위: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29,204	44,724	31,484
국비	14,602	22,362	15,742
지방비	14,602	22,362	15,742

자료: 농림부(2006). 보도자료.

4) 육아지원 예산 총괄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육, 유아교육과 농업인 양육비를 모두 합하면 2005년도에 2조 2952억원이다. 중앙정부 예산이 7171억원이고 지방정부 예산이 1조 5781억원으로 비율로는 각각 31.2%, 68.8%이다.

2006년에는 2조 955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중앙정부 예산이 9972억원이고 지방정부 예산이 1조 9584억원이다. 2005년에 비하여 28.8%인 6600억원 이상이 증가하였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비율은 각각 33.7%, 66.3%로 2005년과 별 차이가 없다.

<표 II-2-9>와 <그림 II-2-1>은 보육·유아교육 예산의 GDP 대비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2005년 우리나라 GDP가 806조 6129억원이므로 GDP 대비 총 육아지원 예산의 비율은 0.29%이다. 보육만은 0.20%, 유아교육만은 0.08%이다. 중앙과 지방정부를 구분하면 중앙이 0.10%, 지방이 0.19%를 차지한다. 이는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2002년에는 우리나라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재정 규모는 GDP 대비 0.12%로 산출되었다.

<표 II-2-8> 보육, 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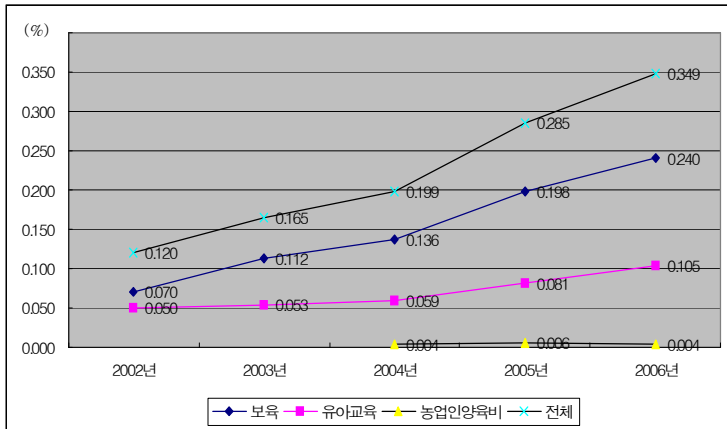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분	국비	지방비	계	GDP 대비 비율
2002년				
보육	209,024	270,045	479,069	0.070
유아교육	20,700	314,079	334,779	0.050
계	229,724	584,124	813,848	0.120
(표 계속)				
2003년				
보육	297,911	514,105	812,016	0.112
유아교육	25,652	356,835	382,487	0.053
계	323,563	870,940	1,194,503	0.165
2004년				
보육	402,114	659,619	1,061,733	0.136
유아교육	51,285	405,282	456,567	0.059
농업인양육비	14,602	14,602	29,204	0.004
계	468,001	1,079,503	1,547,504	0.199
2005년				
보육	591,061	1,004,551	1,595,612	0.198
유아교육	103,667	551,200	654,867	0.081
농업인양육비	22,362	22,362	44,724	0.006
계	717,090	1,578,113	2,295,203	0.285
2006년				
보육	781,784	1,256,318	2,038,102	0.240
유아교육	199,652	686,359	886,011	0.105
농업인양육비	15,742	15,742	31,484	0.004
계	997,178	1,958,419	2,955,597	0.349
(비율)	(33.7)	(66.3)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06).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농림부(2006). 예산 현황.

〈표 II-2-9〉 2005년 총 육아지원, 보육, 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 GDP 대비 비율

구분	국비	지방비	계
계	0.098	0.187	0.285
보육	0.082	0.116	0.199
유아교육	0.013	0.068	0.081
농업인양육비	0.068	0.003	0.006

주: 2005년 GDP는 806조 6219억원(통계청, Kosis)임.



[그림 II-2-1] 육아지원 예산의 GDP 대비 비율

나. 보육·교육 비용의 정부와 부모 부담

1) 보육

2005년 6월 기준으로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대략 2 조 9757 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표 II-2-10〉 보육비용의 국가와 보호자의 부담: 2002~2005

구분	단위: %(백만원)			
	2002.6 백분율	2003.6 백분율	2004.6 백분율	2005.6 백분율 (비용)
보육료 ¹⁾				
- 부모부담	74.6	69.5	65.8	59.8 (1,779,398)
- 정부지원 ²⁾	12.3	12.2	14.6	19.3 (573,932)
인건비·운영비지원 ³⁾	13.1	18.3	19.6	20.9 (622,368)
계	100.0	100.0	100.0	100.0
(총 비용 추정액)	(1,693,214)	(2,088,284)	(2,392,071)	(2,975,698)

주: 1) 보육료는 2002년 보육실태조사 및 2004년 전국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음.

2) 정부 지원은 영유아, 만 5세아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등임.

3) 인건비·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지원금임.

자료: 서문희 외(2003).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보육비용 중 시설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아동 보육료로 중앙정부 사업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2003년 30.5%, 2004년 34.2%로 분석되었고 2005년은 40.2%로 분석되었다 2005년에 인건비 등 시설별로 20.9%,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19.3%가 지원되었다(표 II-2-10 참조). 여기에는 시도 및 시·군·구의 특수사업 예산은 제외하였다. 이 예산이 포함될 경우 정부부담 비율은 10% 이상 증가될 것이다.

2) 유아교육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1조 8414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중 정부가 34.4%의 비용을 부담하고 부모가 65.6%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2-11〉 교육비용의 국가와 보호자의 부담: 2005

구분	비용	비율
교육비		
- 부모부담	1,208,812	65.6
- 정부지원	167,128	9.1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465,509	25.3
계	1,841,449	100.0

주: 1) 교육비 부모부담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전체 아동 총 교육비인 비용 사립유치원 204,300원, 국공립유치원 86,100원을 이용하여 5% 증가를 적용하였음. 2005년 취원아수는 국공립 원아수 124,030명, 사립유치원 417,320명임.

2) 교육비 정부지원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임.

3) 총 비용 분담

보육 및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4조 817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61.1%를 부모가 부담하고 38.9%를 중앙과 지방 정부가 인건비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또는 차등보육·교육비 지원 등으로 부담하고 있다.

〈표 II-2-12〉 육아비용의 국가와 보호자의 분담: 2005

구분	보육비용+교육비용		보육비용+교육비용+농어민양육비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보육·교육 비용				
- 부모부담	2,988,210	62.0	2,943,486	61.1
- 정부지원	741,060	15.4	785,784	16.3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1,087,877	22.6	1,087,877	22.6
계	4,817,147	100.0	4,817,147	100.0

다. 재원

육아비용 지원 자금 재원 흐름은 각기 다른 특성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농림부 3개 부처의 육아지원 재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그림 II-2-2 참조).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재정 재원은 보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있고,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분 교부금과 교육세분 교부금으로 구성된다.¹⁵⁾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방교육세,¹⁶⁾ 시도세 전입금¹⁷⁾, 담배소비세 전입금¹⁸⁾ 등으로 구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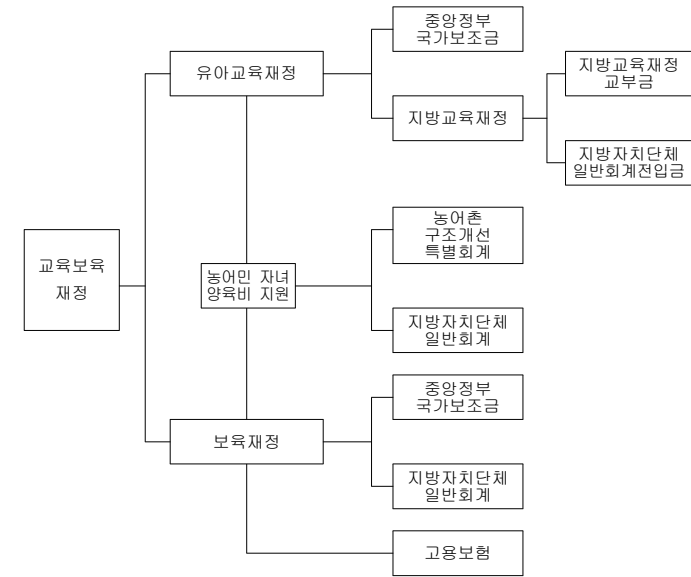
여성가족부는 중앙 보육지원 사업비를 모두 일반회계로 확보하여 각 시도 신청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각 시도에서는 국고 지원금에 지방비 분담금 등 지방재정을 합하여 전체 사업비로 사용한다.

보육재정은 여성가족부가 확보하는 예산 이외에 노동부가 직장보육 지원사업으로 고용보험 기금에서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의 농어민 자녀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및 양육비 지원 사업 예

15) 내국세분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9.4%이고, 교육세분 교부금은 전액임.
 16)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과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균등할 주민세액의 10~25%, 담배소비세액의 50%, 레저세액의 60%임.
 17) 특별시 10%, 광역시·경기도 5%, 기타 도 3.6%임.
 18)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임.

산은 중앙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확보하여 각 시도 사업비 신청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고, 각 시도에서는 중앙에서 배정된 예산과 지방비 분담금을 합하여 사업비로 사용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분담비율은 50:50 이다.



[그림 II-2-2] 유아교육·보육 재정 구성도

라. 육아비용 지원의 격차

1) 시설유형별 격차

지역사회 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중심의 시설별 지원과 보육료 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부모 부담, 정부 지원 총 보육비용에서 시설유형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차이의 원인이 된다.

2005년의 경우 국공립시설 이용 만 1세 미만 아동을 보면 정부가 43 만원을 지원

하고 부모가 30만원을 부담하여 73만원의 비용으로 보육을 받는 반면에 민간시설 이용아동은 부모가 35만원을 부담하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15만원이므로 총 50만원이 보육비용이 된다. 2006년에 영아의 민간시설 기본보조금을 연령별로 각각 249,000원, 104,000원, 69,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아직도 국공립보육시설 비용의 80% 수준이다(표 II-2-13 참조).

영아보육, 야간보육 등 프로그램 지원의 경우에도 시설별로 지원하고 있어 지원을 받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은 시설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평등 구조 속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인건비를 지원받는 영아전담시설은 운영자에게 굉장한 혜택을 인식되고 있다.

〈표 II-2-13〉 시설유형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분담(2006년 기준)

단위: 원, %

구분	국공립·법인			민간		
	정부지원	부모부담(비율)	계	정부지원	부모부담(비율)	계
1세미만아	434,868	299,000(39.5)	733,868	249,000	350,000(58.4)	599,000
만 1세아	267,174	299,000(51.6)	566,174	104,000	308,000(25.2)	412,000
만 2세아	195,305	247,000(55.8)	442,305	69,000	254,000(78.6)	323,000
만 3세아	53,541	153,000(74.0)	206,541	—	204,000(100.0)	204,000
만 4~5세아	44,064	153,000(77.6)	197,064	—	204,000(100.0)	204,000

주: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정부지원은 보육교사 5호봉 인건비와 시설장 인건비 5호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부모 부담은 정부지원단가 및 서울시 민간시설 보육료 상한선을 적용한 것임. 취사부 인건비 미적용.

자료: 여성가족부(2005). 내부자료.

유아교육도 보육과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공립유치원에 비하여 부모가 내는 교육비는 더 많지만, 공적 자금 투입의 차이 때문에 아동 1인당 교육비는 더 적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아동 1인당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원이 공립유치원은 연간 350만원 수준이지만 사립유치원은 46만 8천원 수준으로, 국공립이 사립에 비하여 7.5배가 된다(표 II-2-14 참조).

〈표 II-2-14〉 시설유형별 아동 1인당 교육비 지원액

단위: 천원, 명

구분	2004년			2005년		
	총 사업액(A)	원아수(B)	유아1인당 평균지원액(A/B)	총 사업액(A)	원아수(B)	유아1인당 평균지원액(A/B)
사립	95,640,814	417,807	229	195,255,442	417,320	468
공립	384,628,059	123,638	3,111	433,329,783	124,030	3,494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내부자료.

2003년 세입세출을 기준으로 본 「2004년도 전국 유치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원아의 연간 부모 부담금액은 공립 22만 4천원, 사립 175만 2천원으로 사립이 훨씬 많은데, 그들의 자녀에게 투입되는 연간 총 교육비는 각각 246만원, 191만 4천원으로 공립이 더 많다(표 II-2-15 참조).

〈표 II-2-15〉 유치원 원아 1인당 연간 교육비(2003년 세출 기준)

단위: 천원

구분	1인당교육비		학부모부담금		기관수(개원)	해당 유아 총수(명)
	평균	표준편차	평균	1인당교육비 대비 비율(%)		
계	2,235	3,708	1,236	55.3	447	40,035
공립	2,460	4,739	224	9.1	151	7,434
사립	1,914	1,111	1,752	91.5	296	32,601
t	1.94(p=0.52)		-16.53(p=0.00)		447	40,035

주: 1) 원아 1인당 교육비는 유치원에서 지출한 세출 합계를 원아수로 나누어서 산출한 것임.
 2) 수익자 부담금액은 사립의 경우 사용자 및 수수료, 공립의 경우 사용자 및 수수료(입학금 및 수업료)에 기타 학부모 부담 경비를 합한 금액임.
 3) 사립의 경우 순수한 수업료만 포함되고, 특별 프로그램 부담 경비가 포함되지 않았을 확률이 있으며, 이는 곧 사립의 학부모부담금액을 적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확률이 높음.
 자료: 나정 외(2005). 2004년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교육개발원, 재구성.

시설 운영의 어려움은 불공정 경쟁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은 비싼 비용을 받아야 하므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 보육시설 및 유치원과 불공정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책정된 비용을 다 받지 못하는 것이다.

2) 지역 차이

보육예산의 중앙 및 지방 분담비율은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를 두지 않거나 차이를 두는 경우에도 서울을 제외하고 그 이외 지역은 분담 비율이 동일하여 지방의 재정 상태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표 II-2-16〉 보육 및 유아교육 국고지원 사업비 중앙 및 지방 분담 비율

구 분	서울		지방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보육				
경상보조(운영비 지원, 보육료지원, 인프라 구축)	20	80	50	50
자본보조(신축, 증개축, 장비비 등)	50	50	50	50
유아교육				
학급 자원봉사자 훈련	30	70	30	70
그 외 모든 지원비	50	50	50	50

교육예산 중 학급자원봉사자 훈련비용은 중앙과 지방의 분담이 30:70이고 이외 사업은 모두 50:50이다. 보육예산처럼 서울과 이외 사도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표 II-2-16 참조).

가) 보육 재정의 지역 차이

보육은 중앙 정부의 국고지원 사업 이외에 지방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특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사업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사도 역시 각종 인건비 추가 지원 및 간식비 지원, 교재교구비 추가 등의 형태로 직접 운영비 지원 및 보육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군·구에서도 추가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사도 사업내용과 유사하다.

그런데 지역별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재정배정방식으로 지역적 형평성이 낮아서 보육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6년도에 사도가 특별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¹⁹⁾은 모두 2248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자부담을 제외한 국고지원 사업비 1조 7236억원의 약 1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및 사군·구 특별사업은 사도별 차이가 많다. 서울특별시는 사도 특별사업예산이 전체 국고 지원사업 예산의 42.8%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광주와 충청북도는 1.0%미만으로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게 지역 간의 차이가 크다. 서울 이외에 인천, 대전, 경기가 16~7% 수준이고 제주도가 12%, 울산이 9.7%

19) 기능보강비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사실상 기능보강비의 비율은 높지 않음.

이다(표 II-2-17 참조).

이외에 시·군·구 사업비도 국고지원 사업비의 5.2%가 된다. 그러나 이 역시 서울은 13.7%이지만 광주는 거의 없다.

이러한 특수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 분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따라 지방 재정상의 여유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방의 재정상태와 정적인 관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²⁰⁾가 전남이 각각 20.0%, 67.8%로 가장 낮으나 특별사업비 비율은 재정자주도가 80.7% 인 부산이 가장 낮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이 저소득층이나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이 많아서 지방 분담금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표 II-2-17〉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6

구분	단위: 백만원, %						
	국고사업비 ¹⁾ (A)	시·도 특별사업비 (B)	시·군·구 특별사업비 (C)	국고사업대 비 시·도 특별사업비 (B/A)	국고사업대비 시·군·구 특별사업비 (C/A)	재정 자립도 ²⁾ 평균	재정 자주도 ³⁾ 평균
전체	1,723,613	224,843	89,646	13.0	5.2	54.4	80.2
서울	266,742	114,275	36,486	42.8	13.7	94.3	95.4
부산	109,345	5,141	691	4.7	0.6	70.2	80.7
대구	98,303	871	1,602	0.9	1.6	70.7	84.7
인천	67,986	11,629	1,823	17.1	2.7	69.2	76.5
광주	87,837	479	18	0.5	0.0	57.5	75.1
대전	46,429	7,477	430	16.1	0.9	72.8	83.9
울산	34,397	3,350	312	9.7	0.9	65.7	82.6
경기	301,207	49,935	26,268	16.6	8.7	75.2	85.7
강원	68,537	2,822	677	4.1	1.0	26.7	75.3
충북	72,481	527	8,248	0.7	11.4	31.3	76.4
충남	82,260	5,351	2,703	6.5	3.3	35.3	74.1
전북	112,470	4,569	2,172	4.1	1.9	23.9	70.1
전남	111,149	4,657	2,173	4.2	2.0	20.0	67.8
경북	95,170	1,038	1,847	1.1	1.9	27.8	76.2
경남	121,867	7,048	3,648	5.8	3.0	38.8	75.0
제주	47,433	5,674	548	12.0	1.2	33.8	72.9

주: 1)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것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을 합한 것임. 비율은 천원 단위에서 산출한 것임.

20)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여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하며,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 이외에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로, 최근에 도입함(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공개시스템).

- 2)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100
- 3)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금+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100

- 자료: 1) 서문희 외(2006),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여성가족부(2006), 자치단체 특수시책.
- 3)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공개시스템

한편, <표 II-2-18>은 이러한 2006년도 보육예산을 재원별로 재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보육예산의 38.4%를 분담하고 사도가 28.6%, 사군구가 33.0%를 분담하고 있다. 즉, 중앙, 사도, 사군구의 분담 비율이 38.4:28.6:33.0이다.

사도별로는 서울이 중앙정부 분담률이 12.8%로 가장 낮고 다음이 경기도로 39.9%이다. 그 이외 지역은 모두 40%를 넘는데 그 중에서 인천이 41.7%로 가장 낮고, 광주가 49.7%로 가장 높다. 사도와 사군구의 예산 분담을 보면 사군구 의 분담 비율이 서울이 48.0%로 가장 높고, 다음이 경기, 충북, 인천으로 30~33% 사이에 분포한다.

<표 II-2-18> 시·도별 보육예산 중앙-지방 분담 현황: 2006

단위: 백만원, %

구 분	총계	국고		시·도		시·군·구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전체	2,038,102	781,784	38.4	583,336	28.6	672,983	33.0
서울	417,503	53,348	12.8	163,834	39.2	200,320	48.0
부산	115,177	54,673	47.5	29,907	26.0	30,598	26.6
대구	100,776	49,151	48.8	25,011	24.8	26,613	26.4
인천	81,438	33,993	41.7	22,811	28.0	24,634	30.2
광주	88,335	43,919	49.7	22,199	25.1	22,217	25.2
대전	54,335	23,214	42.7	15,345	28.2	15,775	29.0
울산	38,059	17,198	45.2	10,274	27.0	10,586	27.8
경기	377,410	150,604	39.9	100,269	26.6	126,537	33.5
강원	72,036	34,268	47.6	18,545	25.7	19,223	26.7
충북	81,256	36,241	44.6	18,384	22.6	26,631	32.8
충남	90,314	41,130	45.5	23,240	25.7	25,944	28.7
전북	119,210	56,235	47.2	30,402	25.5	32,574	27.3
전남	117,979	55,575	47.1	30,116	25.5	32,289	27.4
경북	98,055	47,585	48.5	24,312	24.8	26,159	26.7
경남	132,564	60,934	46.0	33,991	25.6	37,639	28.4
제주	53,656	23,717	44.2	14,695	27.4	15,244	28.4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표 II-2-19>는 2004년과 2005년 기준으로 보육아동 1인당으로 환산한 것인데 2004년 기준의 전국 평균은 122만원이지만 지역별로 서울은 183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제주도인 반면에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과 경기도로 평균 80만원대이다. 이는 특별보육사업 예산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는 보육시설 유형의 지역별 분포의 불균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5년도 1인당 비용은 172만원으로 2004년에 비해 50만원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 차이는 조금 달라져서 서울 이외에 전남, 제주, 전북, 충남이 200만원 이상으로 금액이 높다. 이러한 비용의 차이는 정부 재정의 차이도 있지만 지방의 경우는 해당지역의 시설 설립과 운영 주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크다.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이 많으면 국고와 지방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표 II-2-19> 시·도별 보육사업 총예산 및 아동 1인당 예산: 2004, 2005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04년			2005년		
	총예산(A)	보육아동수(B)	1인당 금액(B/A)	총예산(A)	보육아동수(B)	1인당 금액(B/A)
전체	1,047,564	858,345	1.22	1,601,374	930,252	1.72
서울	284,100	155,337	1.83	348,118	168,569	2.07
부산	62,340	53,876	1.16	89,375	58,447	1.53
대구	39,713	39,372	1.01	69,321	44,296	1.57
인천	30,231	37,477	0.81	50,098	40,330	1.24
광주	42,952	35,766	1.20	61,387	38,559	1.59
대전	21,311	18,413	1.16	34,691	20,595	1.68
울산	17,623	20,949	0.84	27,103	21,198	1.28
경기	151,128	184,368	0.82	266,112	201,214	1.32
강원	35,481	30,987	1.15	63,560	32,607	1.95
충북	40,859	35,492	1.15	72,526	38,900	1.86
충남	48,830	38,635	1.26	82,240	40,498	2.03
전북	60,523	44,172	1.37	96,955	46,746	2.07
전남	60,433	40,852	1.48	102,324	43,739	2.34
경북	64,738	47,518	1.36	91,985	51,984	1.77
경남	56,739	56,771	1.00	97,401	63,072	1.54
제주	30,563	18,360	1.67	42,416	19,498	2.16

자료: 여성가족부(각 연도), 보육통계.
 여성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각 연도), 지자체 특수사업(미발간).

보육비용의 지역별 차이로 또 다른 시각에서 부모의 비용부담 능력에 따른 차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 지원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가 국공립 단가에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실제로 보육시설에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결국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2004년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육료를 기준보다 낮게 받는다는 비율이 읍면은 63.0%로 도시 53~55% 수준보다 8~10%p가 높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한 전화조사에서도 읍면 보육시설의 시설유형별 보육료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0세아의 경우 가정보육시설은 국공립에 비하여 55,000 원 정도 높으나 민간개인시설은 17,000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 3세 이상아는 국공립시설에 비하여 민간개인은 18,000원, 가정보육시설은 36,000 원 정도를 더 받는다(표 II-2-20 참조).

〈표 II-2-20〉 읍·면지역 시설유형별 보육료

단위: 천원(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시설수
0세아	314.4	68.8	54
전체	314.4	68.8	54
국공립보육시설	284.5	73.0	4
법인보육시설	304.5	82.0	13
민간보육시설	301.5	71.0	12
가정보육시설	339.2	42.5	24
만 1세아			
전체	259.5	57.6	184
국공립보육시설	247.4	63.0	34
법인보육시설	256.2	59.7	59
민간보육시설	256.4	60.7	45
가정보육시설	279.8	35.7	45
만 2세아			
전체	212.0	48.6	258
국공립보육시설	201.9	52.4	54
법인보육시설	211.0	50.9	84
민간보육시설	212.3	47.3	74
가정보육시설	228.1	34.4	45
만 3세 이상아			
전체	158.4	29.4	268
국공립보육시설	147.9	21.1	57
법인보육시설	150.7	23.6	94
민간보육시설	165.5	32.4	89
가정보육시설	183.4	32.0	28

나) 유아교육 재정의 지역 차이

〈표 II-2-21〉은 최근 3년간 시도 별 전체유치원 지원을 유아 1인당으로 환산한 것이다. 총 예산액은 2004년은 4803억원, 2005년은 6286억원, 2006년은 686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유아 1인당 지원액도 2004년 89만원에서 2005년 116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2004년 기준으로 전라남도가 211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높으며 서울과 대구가 각각 44만원, 40만원으로 가장 낮다. 2005년은 대체로 2004년과 비슷한 양상이지만 대구와 인천의 경우 총 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으나 2004년에 비해 2005년도 유아 1인당 지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II-2-21〉에서 보듯이 유치원 예산은 지역별로 불균형한 상태이며,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역별 지원액이 적고 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원액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I-2-21〉 시·도별 유치원 총예산 및 유아 1인당 예산: 2004~2006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총 사업액(A)	원아수(B)	유아1인당 평균지원액(A/B)	총 사업액(A)	원아수(B)	유아1인당 평균지원액(A/B)	지방교육청 예산액
전체	480,269	541,445	0.89	628,585	541,350	1.16	686,359
서울	38,040	87,468	0.44	52,914	85,302	0.62	59,104
부산	22,914	39,336	0.58	35,641	38,514	0.93	36,106
대구	11,459	28,604	0.40	25,915	28,261	0.92	26,938
인천	16,899	26,656	0.63	28,011	26,136	1.07	27,692
광주	15,076	15,643	0.96	19,047	15,977	1.19	21,350
대전	9,112	19,551	0.47	15,284	20,099	0.76	19,249
울산	10,201	17,936	0.57	13,628	17,718	0.77	16,511
경기	83,674	125,828	0.67	114,596	129,531	0.89	137,839
강원	29,270	15,853	1.85	30,667	15,530	1.98	41,958
충북	27,131	16,835	1.61	31,884	16,230	1.97	37,166
충남	32,034	20,182	1.59	35,515	20,701	1.72	37,155
전북	39,488	21,448	1.84	47,673	20,558	2.32	43,976
전남	45,325	21,438	2.11	47,850	21,078	2.27	48,253
경북	42,670	35,283	1.21	54,880	35,562	1.54	52,143
경남	50,154	43,844	1.14	66,203	44,447	1.49	77,433
제주	6,825	5,540	1.23	8,875	5,706	1.56	9,901

주: 2006년 2004년과 2005년은 총 사업비이고 2006년은 지방정부 예산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내부자료.

<표 II-2-22>은 시도 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예산을 유아 1인당으로 환산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공·사립 유치원 전체에 대한 지원액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유치원 예산 대부분이 공립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어서 시설유형별 불균형 상태이며, 동일 유형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립유치원의 총 예산액은 2005년은 4333억원이고 공립유치원 유아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005년 349만원인데,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547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라남도 와 강원도가 높으며 대전이 227만원으로 가장 낮다. 사립유치원은 광주가 76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이 72만원으로 높고 서울과 경기도가 31만원으로 가장 낮다.

<표 II-2-22> 시·도별 공립 및 사립 유치원 총예산 및 유아 1인당 예산: 2005
단위: 백만원, 명

구분	공립			사립		
	총 사업액(A)	원아수(B)	유아1인당 평균지원액 (A/B)	총 사업액(A)	원아수(B)	유아1인당 평균지원액 (A/B)
전 체	433,330	124,030	3.49	195,255	417,320	0.47
서울	29,229	8,588	3.40	23,685	76,714	0.31
부산	10,324	3,181	3.25	25,316	35,333	0.72
대구	8,812	3,487	2.53	17,103	24,774	0.69
인천	14,738	4,577	3.22	13,273	21,559	0.62
광주	9,205	3,108	2.96	9,846	12,869	0.76
대전	6,705	2,955	2.27	8,579	17,144	0.50
울산	7,876	2,258	3.49	5,752	15,460	0.37
경기	84,379	31,031	2.72	30,218	98,500	0.31
강원	25,838	6,324	4.09	4,830	9,206	0.53
충북	27,324	7,763	3.52	4,560	8,467	0.54
충남	30,759	8,667	3.55	4,756	12,034	0.40
전북	39,021	7,137	5.47	8,653	13,421	0.65
전남	41,941	9,946	4.22	5,909	11,132	0.53
경북	41,822	10,701	3.91	13,059	24,861	0.53
경남	48,235	12,009	4.02	17,968	32,438	0.55
제주	7,122	2,298	3.10	1,753	3,408	0.5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내부자료, 재구성.

3. 특성 및 시사점

가. 우리나라 육아지원에 투자되는 재정의 규모가 작다

보육 및 유아교육지원 서비스 부모 부담률이 60% 수준에 달하지만 GDP 대비 비율은 2006년 0.35%에 불과하다. 부담 완화 이외에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도 재정이 지원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 보육시설과 유치원간의 비용 지원의 차이가 있다

보육비용은 정부 부담 40.2%, 부모부담 59.8%이며, 유아교육 비용은 정부가 34.4%를 부담하고 부모가 65.6%를 부담한다. 유치원의 경우 철저하게 국·공립 중심이고, 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에 대한 지원은 유치원에 훨씬 못 미치지만 법인 시설도 지원하고 있다.

다.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라도 운영주체별로 지원상의 격차가 있어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운영주체별 공적자금 투입의 차이로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공립에 비하여 부모 부담은 많지만, 1인당 총 소요비용은 더 적다. 유치원도 2005년 기준으로 원아당 연간 정부 지원은 공립 349만원 사립 47만원으로 공립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라.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여, 지역간 재정 균등화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 시·도별 유아교육·보육 재정 지원 불균등

전국 평균 원아당 유아교육 지원 예산은 137만원, 보육료는 175만원임. 강원 충북, 전북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보육비용이 유아교육비용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1> 참조).

2005년도 유아교육재정과 보육재정의 시·도별 배분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졌으며(보육재정 지니계수: 0.11, 유아교육재정 지니계수: 0.23), 유아교육재정 지원의 시·도별 배분이 더 불평등함을 알 수 있다(<표 II-3-2>, <표 II-3-3> 참조).

▶ 시·도별 공·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불균등

2005년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배분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졌으며(공립유치원재정 지니계수: 0.116, 사립유치원재정 지니계수: 0.188),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이 더 불평등함을 알 수 있다(<표 II-3-4>, <표 II-3-5> 참조).

사립유치원의 경우 아동 1인당 지원 금액이 서울과 경기도가 31만원으로 가장 낮고, 광주가 76만원으로 가장 높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표 II-3-1> 2005년도 시·도별 1인당 유아교육비·보육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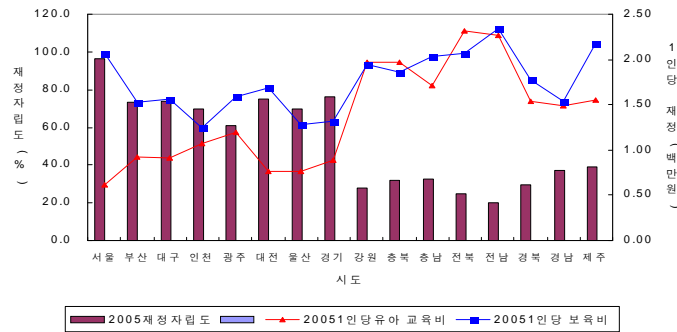
단위 : %, 백만원

구분	2005 재정자립도(%)	2005 1인당 유아 교육비	2005 1인당 보육비	교육비/보육비
서울	96.1	0.62	2.07	0.30
부산	73.4	0.92	1.53	0.60
대구	73.9	0.92	1.56	0.59
인천	70.0	1.07	1.24	0.86
광주	60.6	1.19	1.59	0.75
대전	75.0	0.76	1.68	0.45
울산	69.9	0.77	1.28	0.60
경기	76.2	0.88	1.32	0.67
강원	27.5	1.97	1.95	1.01
충북	31.7	1.96	1.86	1.05
충남	32.7	1.72	2.03	0.84
전북	25.1	2.32	2.07	1.12
전남	19.9	2.27	2.34	0.97
경북	29.6	1.54	1.77	0.87
경남	37.5	1.49	1.54	0.96
제주	39.3	1.56	2.18	0.71
평균	52.4	1.37	1.75	0.77

<표 II-3-2> 2005년 보육 재정 배분 분석

구분	지방 보육재정 총액	보육시설 보육 총액	보육비 비율	원아수	원아비율	1인당 보육비	이득률
서울	38,040	348,118	0.2182	168,569	0.1812	2.07	1.2040
부산	22,914	89,375	0.0560	58,447	0.0628	1.53	0.8915
대구	11,459	69,321	0.0434	44,296	0.0476	1.56	0.9124
인천	16,899	50,098	0.0314	40,330	0.0434	1.24	0.7242
광주	15,076	61,387	0.0385	38,559	0.0415	1.59	0.9282
대전	9,112	34,691	0.0217	20,595	0.0221	1.68	0.9820
울산	10,201	27,103	0.0170	21,198	0.0228	1.28	0.7454
경기	83,674	266,112	0.1668	201,214	0.2163	1.32	0.7710
강원	29,207	63,560	0.0398	32,607	0.0351	1.95	1.1364
충북	27,131	72,526	0.0455	38,900	0.0418	1.86	1.0870
충남	32,034	82,240	0.0515	40,498	0.0435	2.03	1.1839
전북	39,488	96,955	0.0608	46,746	0.0503	2.07	1.2092
전남	45,325	102,324	0.0641	43,739	0.0470	2.34	1.3639
경북	42,670	91,985	0.0576	51,984	0.0559	1.77	1.0316
경남	50,514	97,401	0.0610	63,072	0.0678	1.54	0.9003
제주	6,825	42,416	0.0266	19,498	0.0210	2.18	1.2683
합계	480,569	1,595,612	1.0000	930,252	1.0000	1.72	

2005 시도 재정 자립도와 교육 보육 재정



[그림 II-2-3] 2005년도 시·도 재정 자립도 및 교육·보육 재정

구분	보육비비율	원아비율	이득률
인천	0.0314	0.0434	0.7242
울산	0.0170	0.0228	0.7454
경기	0.1668	0.2163	0.7710
부산	0.0560	0.0628	0.8915
경남	0.0610	0.0678	0.9003
대구	0.0434	0.0476	0.9124
광주	0.0385	0.0415	0.9282
대전	0.0217	0.0221	0.9820
경북	0.0576	0.0559	1.0316
충북	0.0455	0.0418	1.0870
강원	0.0398	0.0351	1.1364
충남	0.0515	0.0435	1.1839
서울	0.2182	0.1812	1.2040
전북	0.0608	0.0503	1.2092
제주	0.0266	0.0210	1.2683
전남	0.0641	0.0470	1.3639

지니계수=0.110142

<표 II-3-3> 2005년 유치원 지원 재정 배분 분석

구분	유치원 교육총액	교육비 비율	원아수	원아비율	1인당 교육비	이득률
서울	52,914	0.0842	85,302	0.1576	0.62	0.5343
부산	35,614	0.0567	38,514	0.0711	0.92	0.7964
대구	25,915	0.0412	28,261	0.0522	0.92	0.7898
인천	28,011	0.0446	26,136	0.0483	1.07	0.9231
광주	19,047	0.0303	15,977	0.0295	1.19	1.0268
대전	15,284	0.0243	20,099	0.0371	0.76	0.6550
울산	13,628	0.0217	17,718	0.0327	0.77	0.6625
경기	114,569	0.1823	129,531	0.2393	0.88	0.7618
강원	30,667	0.0488	15,530	0.0287	1.97	1.7008
충북	31,884	0.0507	16,230	0.0300	1.96	1.6920
충남	35,515	0.0565	20,701	0.0382	1.72	1.4777
전북	47,673	0.0758	20,558	0.0380	2.32	1.9973
전남	47,850	0.0761	21,078	0.0389	2.27	1.9553
경북	54,880	0.0873	35,562	0.0657	1.54	1.3292
경남	66,203	0.1053	44,447	0.0821	1.49	1.2829
제주	8,875	0.0141	5,706	0.0105	1.56	1.3396
합계	628,529	1.0000	541,350	1.0000	1.16	

구분	교육비비율	원아비율	이득률
서울	0.0842	0.1576	0.5343
대전	0.0243	0.0371	0.6550
울산	0.0217	0.0327	0.6625
경기	0.1823	0.2393	0.7618
대구	0.0412	0.0522	0.7898
부산	0.0567	0.0711	0.7964
인천	0.0446	0.0483	0.9231
광주	0.0303	0.0295	1.0268
경남	0.1053	0.0821	1.2829
경북	0.0873	0.0657	1.3292
제주	0.0141	0.0105	1.3396
충남	0.0565	0.0382	1.4777
충북	0.0507	0.0300	1.6920
강원	0.0488	0.0287	1.7008
전남	0.0761	0.0389	1.9553
전북	0.0758	0.0380	1.9973

지니계수=0.23029

<표 II-3-4> 2005년 공립유치원 지원 재정 배분 분석

구분	유치원 교육총액	교육비 비율	원아수	원아비율	1인당 교육비	이득률
서울	29,229	0.0674	8,558	0.0690	3.42	0.9772
부산	10,324	0.0238	3,181	0.0257	3.25	0.9286
대구	8,812	0.0203	3,487	0.0281	2.53	0.7230
인천	14,738	0.0340	4,577	0.0369	3.22	0.9213
광주	9,205	0.0212	3,108	0.0251	2.96	0.8474
대전	6,705	0.0155	2,955	0.0238	2.27	0.6492
울산	7,876	0.0182	2,258	0.0182	3.49	0.9980
경기	84,379	0.1947	31,031	0.2503	2.72	0.7780
강원	25,838	0.0596	6,324	0.0510	4.09	1.1690
충북	27,324	0.0630	7,763	0.0626	3.52	1.0071
충남	30,759	0.0710	8,667	0.0699	3.55	1.0154
전북	39,021	0.0900	7,137	0.0576	5.47	1.5643
전남	41,941	0.0968	9,946	0.0802	4.22	1.2065
경북	41,882	0.0966	10,701	0.0863	3.91	1.1198
경남	48,235	0.1113	12,009	0.0968	4.02	1.1492
제주	7,122	0.0164	2,298	0.0185	3.10	0.8867

구분	교육비비율	원아비율	이득률
대전	0.0155	0.0238	0.6492
대구	0.0203	0.0281	0.7230
경기	0.1947	0.2503	0.7780
광주	0.0212	0.0251	0.8474
제주	0.0164	0.0185	0.8867
인천	0.0340	0.0369	0.9213
부산	0.0238	0.0257	0.9286
서울	0.0674	0.0690	0.9772
울산	0.0182	0.0182	0.9980
충북	0.0630	0.0626	1.0071
충남	0.0710	0.0699	1.0154
경북	0.0966	0.0863	1.1198
경남	0.1113	0.0968	1.1492
강원	0.0596	0.0510	1.1690
전남	0.0968	0.0802	1.2065
전북	0.0900	0.0576	1.5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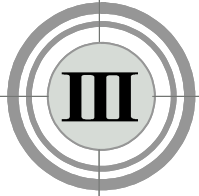
지니계수=0.115799

<표 II-3-5> 2005년 사립유치원 지원 재정 배분 분석

구분	유치원 교육총액	교육비 비율	원아수	원아비율	1인당 교육비	이득률
서울	23,685	0.1213	76,714	0.1838	0.31	0.6599
부산	25,316	0.1297	35,333	0.0847	0.72	1.5313
대구	17,103	0.0876	24,774	0.0594	0.69	1.4755
인천	13,273	0.0680	21,559	0.0517	0.62	1.3158
광주	9,846	0.0504	12,869	0.0308	0.77	1.6352
대전	8,579	0.0439	17,144	0.0411	0.50	1.0695
울산	5,752	0.0295	15,460	0.0370	0.37	0.7952
경기	30,218	0.1548	98,500	0.2360	0.31	0.6557
강원	4,830	0.0247	9,206	0.0221	0.52	1.1213
충북	4,560	0.0234	8,467	0.0203	0.54	1.1510
충남	4,756	0.0244	12,034	0.0288	0.40	0.8447
전북	8,653	0.0443	13,421	0.0322	0.64	1.3780
전남	5,909	0.0303	11,132	0.0267	0.53	1.1345
경북	13,059	0.0669	24,861	0.0596	0.53	1.1227
경남	17,968	0.0920	32,438	0.0777	0.55	1.1839
제주	1,753	0.0090	3,408	0.0082	0.51	1.0994
합계	195,260	1.0000	417,320	1.0000	0.47	

구분	교육비비율	원아비율	이득률
경기	0.1548	0.2360	0.6557
서울	0.1213	0.1838	0.6599
울산	0.0295	0.0370	0.7952
충남	0.0244	0.0288	0.8447
대전	0.0439	0.0411	1.0695
제주	0.0090	0.0082	1.0994
강원	0.0247	0.0221	1.1213
경북	0.0669	0.0596	1.1227
전남	0.0303	0.0267	1.1345
충북	0.0234	0.0203	1.1510
경남	0.0920	0.0777	1.1839
인천	0.0680	0.0517	1.3158
전북	0.0443	0.0322	1.3780
대구	0.0876	0.0594	1.4755
부산	0.1297	0.0847	1.5313
광주	0.0504	0.0308	1.6352

지니계수=0.187705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 및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2.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여기에서는 우선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광역의 경우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와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누구이든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 조문을 모두 들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지원 관련 법적 근거는 주로 유아교육법과 동법시행령,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차례대로 법률과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의 법단체를 이루는 것이며, 상위법규범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법단체별이 아니라 지원의 내용별로 이 법령들을 통합하여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취학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 지원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은 취학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²¹⁾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주목할 것은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즉, 그냥 지방자치단체라고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행정기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 지방자치단체 내에 별도의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없다면 이것은 곧 일반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별도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의 구체적 담당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다음과 같은 관련 조문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제20조 (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21) 제24조 (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

위에서 법률이 위임한 대통령령인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무상교육의 혜택이 주어지는 순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²²⁾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인 유아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위의 유아교육법 제24조 제3항). 이에 따라서 유아교육법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2) 제29조 (무상교육대상자 등)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인 유아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 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교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가구의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나. 사회적 취약지역에서의 교육비용 납부 방법의 별도 규정

유아교육법 제25조는 ‘교육비용등’이라 하여 유치원의 설립 경영자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특히 사회적 취약지역에서의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5조(교육비용 등) ①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대상 유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여부
 3. 당해 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여부
-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서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제30조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이 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2.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3. 「도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벽지
4.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다.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

유아교육법 제26조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2>

1. 수급자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

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소득(이하 "실제소득"이라 한다)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하여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2>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또한 유아교육법의 대통령령인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1조 (저소득층 자녀의 범위)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라 함은 가구유형·소득수준·재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이를 받은 유아교육법시행규칙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4조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가구의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를 받아 유아교육법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흥미로운 것은 이 시행령의 같은 조문 제3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에서만은

일반자치행정기관인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입법론으로 말하면 이 조항은 여기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자체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권리침해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와 행정조직을 정하는 경우(행정조직법정주의 원칙)에는 이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기관에 어떠한 권한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은 기본적으로 법률사항이다.

마. 유치원 증일제 운영 지원

유아교육법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증일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증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증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제33조 (증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에서도 역시 일반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다.

제33조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일반자치단체장의 지원 근거 조항에 대한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가. 법제의 문제점

1) 법적사무체계의 경직성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에 기관 위임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원을 유도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관위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바가 아닌 국가사무로 볼 수 있고 더욱이 지방의회에서 관여할 수도 없다. 단체위임사무만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관여가 가능하지만 기관위임사무는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법 규정은 교육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유아교육사무가 처리되는 것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과 중앙의 인적, 재정적 체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유아교육 사무와 영유아 보육 사무는 교육인적자원부 혹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수행되고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관여 범위는 넓지 않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자발적이거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앙 부처 간 사무관할과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관계가 얽혀 복잡하기만 하고 실질적인 지원의 확대라는 과제가 적절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시·도에 따라서는 조례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앙집권적인 행

정책제로 말미암아 지역의 자발적인 노력이 유발되지 못하고 매우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법제의 정비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2)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준 미비

유아교육과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되려면 서로 이질적인 두 체제(유아교육, 영유아보육)가 가진 공통적인 목적과 공통적인 사무성격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 차별됨이 없이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한 과학적인 기준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원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지원을 위한 관리기준도 미비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지방의회가 제정하여 운영 중인 조례들을 살펴보면 그 규정범위가 서로 다르고 내용들도 같지 않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원에 관한 기준이 다르게 되면 지역이라는 요인에 의하여 차별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지역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영유아 지원 행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3) 법운영에 있어서의 부처간 상호협력 미흡

현재 사립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그리고 보육시설은 아동복지법이나 사회복지법인관계법에 따라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관련 법률을 집행하는 부처와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는 체제가 미흡하고 별도의 체제로 운영되게 된다.

별도의 법체제로 운영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법률과 시행령, 부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이르기까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며 각종 기준이나 관리 지침이 이원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법을 제정할 때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단위에서 원활하게 영유아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하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가령 부처간 공동 지침을 작성한다던가 공동기준을 제시한다던가 하는 법운영의 공조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 분야의 법적 정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의 방향성과 적극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4) 빈곤층 자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지원제도 미흡

빈곤층 자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제도가 절실하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일부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 지역이라는 기준에 치우쳐 실제로 빈곤층 자녀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원활동이 종종 있으나 그 수준이 미흡하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나. 법제 개선 방안

첫째,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그 제12조에 3항을 추가하고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자치단체장은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관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상위법적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둘째, 역시 국가 차원에서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와 33조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유치원 소요경비의 지원 근거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자체를 개정하여 여기에 근거를 두게 한다.

셋째, 시도차원에서 위의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게 하되 조례를 제정하여 하위의 시군구 차원에서 유치원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시도가 노력하게 한다.

넷째, 유치원교육은 특히 신군구요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할 것이므로 모든 시군구 역시 근거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간에 예산의 사정이 다르므로 국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상의 지원책을 따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체계 법제 개선(단체위임사무화)

우리나라의 행정법학 통설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이나 성격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기관으로 하여금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지역적인 공법상의 사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는 의미에서 권리능력자이고, 다수인으로 구성된다는 의미에서 사단(社團)이며, 공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고권적(高權的)인 수단으로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공법상의 사단이다(홍정선, 1993:29).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는 별도의 기관이 분장하며(지자법 제112조 1항) 이러한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지자법 제112조 2항).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은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기관으로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두고 있다²³⁾.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기본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어떻게 지원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단순한 논리에만 의지한다면 유아교육에 관하여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분장하므로 시나 도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정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시·도에 따라서는 지방의회의 조례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 있는가 하면, 그러한 규정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아직 이 분야의 법제가 정리되지 않고 형성 중인 것이다. 더욱이 유아교육에 관한 법제도와 별도로 영유아보육법제가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중앙의 관련 부처가 나름대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별로 업무의 관할을 분간하는 일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다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비판되어 온 중앙 중심의 행정체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분권법 등으로 이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문제도 재정리되게 된 시점에 와 있어서 유아교육업무도 이러한 맥락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우리의 유아교육행정 상황에 대하여 최근 일본이 추진한 행정개혁은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이다.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를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이 기관위임 방식의 사무 처리에는 경비의 지원과 함께 지휘 감독을 받을 의무도 따라가기 때문에 중앙 중심의 지방행정체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장치가 되어 왔다. 복지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기관위임사무를 전면 폐지한 일본에서도 장기간 복지업무를 중앙에서 관장해 온 배경에는 이와 같은 기관위임사무라는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악화와 고령화의 진전 등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일본에서는 기관위임사무가 전면 폐지되고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적위탁사무(중전의

단체위임사무)만이 남게 되었다. 일본으로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행정개혁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관위임사무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중앙중심의 행정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중전의 일본 행정체제와 다름이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각각 그들이 수행하는 많은 업무를 기관위임사무로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련해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기관위임사무의 비율은 대단히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가령 공립학교 운영사무에 관해서 보면 학교 명칭은 공립학교이지만 교직원들은 국가공무원이고 예산도 중앙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은 교육사무가 대부분 기관위임사무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관계 사무도 대부분 국가사무의 기관위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교육관계 사무뿐만 아니라 복지관계 사무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중앙 부처들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일을 하는 결과가 된다. 특히 교육사무에 있어서는 기관위임사무제도로 인하여 특이한 업무체제가 형성되는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등의 국가사무를 기관위임사무로 위임받아 처리하고,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가사무를 기관위임사무로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는 것이며, 환언하면,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대표하고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대표하게 된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원칙적으로 의결권이나 감사권 및 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의회의 권한 밖의 일인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넘을 수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지자법 제9조). 이렇게 되므로 지방의회로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감을 통해서 유아교육분야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 어떤 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토록 하는지 알 수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지방의회는 유아교육업무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지방공무원이다. 그러나 유아교육에 있어서 공립유치원 원장을 비롯하여 교사들은 모두 국가공무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체계상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에 비해서 갖는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갖는 생각도 그리 긍정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우선 유아교육사무라도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단체위임사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단

23) 교육위원회는 최근의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한 위원회가 되었음.

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법률이 정하는 사무로서 이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의결하거나 감사 및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종전 보다는 지방의회와 관심과 지원이 늘어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요하면 유치원 교사들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인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본다면 유아교육에 관한 사무는 이를 단체위임사무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현재보다 오히려 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체위임사무로 전환시키더라도 종전처럼 중앙에서 지원하던 예산은 계속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은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능력에 따라 유아교육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리기준 마련

영유아의 보육이나 교육을 막론하고 일반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논란이 많은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원에 대한 기준이 명료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하겠다. 2006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여 운영 중인 조례들의 규정범위가 서로 다르고 내용들도 다른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영아와 유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통합적인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은 자치단체만의 책임이 아니며 국가적 수준에서의 지침이 명료치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교육 사무를 아직 국가 사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주어야 하지만 그것이 아직 명료하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이른 바 ‘認定 어린이 園’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현재 취학전 교육·보육의 지원을 위해서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공동으로 ‘유아연후추진실(幼保聯携推進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역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인정어린이원’이다. 이것은 유치원과 보육원 가운데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인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은 도·도·부·현지사로부터 ‘인정어린이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정어린이원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문부과학성장관과 후생노동성장관이 협의

해 정하는 국가의 지침을 참작해서 각 도·도·부·현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국가 지침은 직원의 배치, 직원의 자격, 교육과 보육의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정어린이원 제도를 도입하는 까닭은 유치원과 보육소가 그 기능은 유사하면서도 체제가 달라 이 두 유형의 기관들의 공통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유치원과 보육소 각각의 유형으로 그대로 있을 때에는 사학조성비나 시설정비비 등 유치원에만 지원되었던 것을 보육소에도 지원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 등에게만 지원되었던 것을 인정어린이원으로 인정받은 유치원에 대해서도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다만 유치원과 보육원의 제휴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유보연휴형,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재량형의 네 가지 형태를 인정하고 각 형태별로 운영을 다소 유연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제도는 우리에게도 유익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지역에 골고루 없는 점, 이 양자의 기관이 기능이 유사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양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기준이 명료하지 못한 점 등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제도적으로 하나의 형태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관에 적용되었던 기준이나 지원방침을 공통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상당히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 집의 두 기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공통된 관리와 지원이 가능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법 운영에 있어서 부처 간 공조체제의 구축

현재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그 교육내용과 설립 경영의 방식이 결정되어 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경영자와 함께 학교법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집 등 보육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인 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제도와 사립학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법인제도에 의해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설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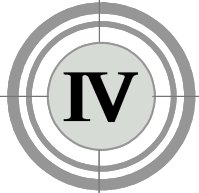
이 같은 상황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유사한데 이 문제를 일본의 경우에는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공조체제로 해소하고 있다. ‘취학 전의 어린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2006년 6월 15일 법률 제77호)와 이 법에 근거를 둔 '취학전의 어린이에 관한 교육·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문부과학 장관과 후생노동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고시 제1호, 2006년 10월 1일)이 이에 관련된 법령이다.

우선 고시의 형태를 보면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공동' 고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 고시가 두 부처의 합의를 거친 공동 기준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구체적인 것을 규정한다.

동 법률의 취지는 일본에서의 급속한 출생률 감소와 가정 및 지역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전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수요가 다양한 것이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 교육 및 보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제1조). 그리고 여기서 어린이라 함은 출생 후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말한다(제2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인정어린이원'의 인정을 하면 유치원과 보육원은 각각 학교교육법과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있어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중의 중요한 내용은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법령의 일부와 각각의 지원에 관한 규정들의 적용 등이다. 즉 학교법인에 의해서 설치된 유치원은 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설치된 보육원이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받고(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설치된 보육원이 받는 지원을 어느 정도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설치된 보육원은 학교법인에 의해서 설치된 유치원이 받는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보육원과 유치원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고 한편으로는 학교법인이 유치원과 보육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두 기관 모두 취학 전 어린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 동일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타당하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법률로 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제정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V

시·도별 유아교육·보육 지원 현황

1. 시·도별 보육 예산지원 현황 및 근거
2. 시·도별 유아교육 예산지원 현황 및 근거
3. 지자체의 유아교육 지원 우수사례 분석
4. 지자체의 유아교육 지원 특성 및 문제점

1. 시도별 보육 예산지원 현황 및 근거

가. 시도별 보육 예산지원 현황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2006년 현재 예산 지원 현황은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과 여성가족부의 2006년도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자체가 보육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매우 다양하나, 가장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은 보육료 지원 사업이다. 정부에서 하는 지원 외에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계층의 자녀 직원 자녀 둘째 이상 자녀, 셋째 이상 자녀 등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사업 외에도 입소료 지원,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지원,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 셋째 이상 보육도우미 파견 시설운영비 지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어린이집 행사 지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지원 등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양육비 지원이나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 아동이 다니는 시설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드물게,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건강교실, 사립유치원 시간연장, 종일제반 인건비 지원이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유아들을 어떤 기관에 보내느냐에 따라 차별화된 혜택을 받게 된다. 보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6년 현재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 260,000여명이(유치원 재원생의 약 과반수)이 종일제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치원에서도 보육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기관에 따라 지원하기보다는 보육기관과 유치원을 모두 포괄하여 다니는 기관에 상관없이 영유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IV-1-1> 16개 시·도별 보육 관련 특수시책사업 현황(2006년도)

시·도	시·도 보육 사업	
서울 특별시	보육료 지원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 지원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 만 2세까지
	시설운영비 지원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 추가지원
		방과후교실 운영비 지원
		보육프로그램비 지원
	보육교사 증식비	

시·도	시·도 보육 사업	
부산 광역시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구립놀이방 지원
		장애아교재교구비 지원
		보육기자재 현대화
	종사자 인건비 지원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
		방과후보육시설 설치비
		소규모 취사부 인건비
		0세아 전담간호사 인건비
		비상근교사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
		장애아통합시설 특수교사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시간연장교사 근무수당	
	시 자체사업	종교시설교사 인건비
		민간시설 환경개선비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보육료 지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기타 사업	
	시설운영비 지원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정부지원시설 현장 학습 및 문화행사비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출산휴가 보조교사인건비
		정부지원시설 차량운영비
		민간보육시설 현장학습비
		가정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보육시설종사자 직무연찬회		
보육인대회		
보육교사 체육대회		
교사인건비 지원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24시간 시설 인건비	
	방과후시설 인건비	
	시교육청 방과후 교실운영	
대구 광역시	보육료 지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시설운영비 지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활성화 지원
		시청어린이집 운영
	인건비 지원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연찬회	
인천 광역시	보육정보사업	보육정보지 발간
		보육 프로그램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운영(IP 부여 등)
		ADHD 정서장애아동 조기 진단 사업

시·도	시·도 보육 사업	
시·도		종사자 교육사업
		부모교육 및 육아지원 사업
		육아지원을 위한 세미나 개최
		뮤지컬 공연사업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종사자 관리 프로그램 제작
	교사지원	대체교사 인력은행 운영
		순회교사제(circuit-master) 운영
		모범보육시설 건정 사업
		보육전문요원 연구비
		보육홍보사업
		보육교사 특수보육 특성화 연수
		모범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보육교사 교육원 양성과정 교재교구 전시회
		보육교사 능력향상 세미나
		보육인 한마당 애회
		특수보육시설 운영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시설 체육대회 지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셋째아 보육료
	보육아동지원	야간(24시) 보육료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조소독아동 허장 학습비
		지역사회 보육상담실(육아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보육정보센터 운영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
		장애아통합시설 개보수
		노후보육시설 개보수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설치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추가 지원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교재교구비
광주광역시	시설운영비 지원	장애아 전담시설 차량운영비
	기타	보육시설장 연찬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대전광역시	시설운영비 지원	보유시설 차량유지비
		보육시설교재교구비
		특수보육시설(영아, 장애아, 방과후 등) 보육아동 간식비
		시간연장형(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보육도우미 파견

시·도	시·도 보육 사업	
울산광역시	교사 지원	저소득층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 보전
		보육시설 자원봉사자 인력은행 운영
		특수보육교사(영아, 장애아, 방과후 등) 특별수당
	보육아동 지원	일반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시간연장형(24시간, 야간) 보육교사 수당
		종사자 교통급식비
		보육시설(민간, 가정) 영아반 교사 보조수당
	기타	저소득층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셋째아 보육료 지원
		5층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보육 교재교구 작품 개발 평가 및 전시회
	보육료 지원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여성문화회관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시설운영비 지원	시립어린이집 지원
		장애아동보육료
	교사인건비 지원	둘째(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 추가지원
난방비 지원		
보육정보센터 지원	장애아통합 국공리비시설 설치비	
	민간보육시설 노후장비 현대화 사업	
	인건비 미지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직무교육시 대체교사 인건비	
	법인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지원	장애전담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공립·법인 특수보육 종사자 수당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지원	영양사 순회파견 사업
	보육료 지원	영양사 순회파견 사업
경기도	시설운영비 지원	둘째 이상 자녀 보육료
		방과후 시설 교사 인건비
		보육기자재 현대화
	교사인건비 지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귀후생비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교육지원	장애아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영아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보육행사 지원 등	보육시설장 전문교육과정 운영	
	보육시설장 전문교육 교재 편찬	
	평가인증대비 보육시설 평가지도	
	경기도 보육정책위원 선진화 추진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시·도	시·도 보육 사업	
		보육교재교구 경진대회
		보육세미나 개최
		보육교사교육원 실기연구발표회
		경기보육인대회
강원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시설운영비 지원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
		민간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강릉시)
	교사인건비 지원	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비
		보육시설 환경개선
	기타	보육교사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충청북도	행사 지원
강원 보육인대회		
시설 운영비 지원		도-도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연찬
충청남도	행사 지원	보육인의 날 행사
		유아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뮤지컬 순회공연
	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 프로그램 보급 및 전산관리 지원
		농촌 미지원 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지원
전라북도	행사 지원	민간보육시설 법정 저소득 차액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시설운영비 지원	장애아 통합반 운영
		공립법인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전라남도	교사인건비 지원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기타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충남보육의 날 행사 및 우수보육교재 교구 평가 대회
경상북도	시설운영비 지원	저소득층 보육간식비
		출산보육교사 대체 인건비
	교사인건비 지원	민간시설 농어촌 차량 운영비
		보육교사 연구수당
경상남도	시설운영비 지원	보육정보센터 특별근무수당
		시단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교사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연합회 연찬회 행사 지원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냉난방비 지원
경상북도	시설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친환경 우수 농산물 식재료비
		영아,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교사인건비 지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

시·도	시·도 보육 사업		
경상남도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만4세 셋째아 우 무상보육료	
		보육시설종사자 격부수당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교재교구 제작 및 전시회	
제주도	행사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연수회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시설운영비 지원	저소득아동 영양급식비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교사인건비 지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교사수당	
		보육시설 취사부 등 인건비 지원	
	기타	농어촌 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장애아 보육시설 운영 지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냉난방비

시도의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대개 보육료(보육아동) 지원, 시설운영비 지원, 교사인건비 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간혹 설치비 지원, 보육정보사업 지원 행사지원 등을 하는 구도 찾아볼 수 있었다.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유치원 지원사업에 비해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나, 구별로 특성화되어 있기보다는 일관되게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지원 금액도 유치원 지원에 비해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은 지자체의 2006년 보육관련 지원 예산액이 정리된 표이다 보육관련 지원 예산액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지원을 비롯하여 기관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육관련 지원은 시도별로 금액 편차가 크고 시도와 시군구가 지원하는 금액의 비율도 시도별로 상당히 다양하다.

<표 IV-1-2>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예산 지원 현황(2006년도)

단위: 천원

지자체	시·도 예산액	시·군·구 예산액	총 예산액
서울특별시	114,274,676	36,485,948	150,424,624
부산광역시	5,140,800	691,463	5,832,263
대구광역시	870,500	1,602,214	2,472,714
인천광역시	11,629,000	1,828,305	13,457,305
광주광역시	479,200	18,463	497,663
대전광역시	7,476,532	429,750	7,906,282
울산광역시	3,350,320	311,848	3,662,168
경기도	49,935,240	26,267,653	76,202,893
강원도	2,822,139	677,315	3,499,454
충청북도	527,000	8,247,592	8,774,592
충청남도	5,350,850	82,067	5,432,917
전라북도	4,568,550	2,171,886	6,740,436
전라남도	4,656,950	2,172,754	6,829,704
경상북도	1,038,000	1,847,023	2,885,023
경상남도	7,048,464	3,648,193	10,696,657
제주도	5,674,000	548,482	6,222,482
합계	224,842,221	87,030,956	311,537,177

자료: 여성가족부(2006).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서울특별시의 서초구 사립유치원 시간연장, 종일반 인건비 지원금액은 유아교육 예산지원
이므로 제외하였음.

<표 IV-1-3> 시·도별 보육 관련 원아1인당 지원액(2006년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총 예산액(천원)	원아수(명)	1인당 지원액(원)
서울특별시*	94.3	150,424,624	177,952	845,310
부산광역시	70.2	5,832,263	58,652	99,438
대구광역시	70.7	2,472,714	50,332	49,128
인천광역시	69.2	13,457,305	46,009	292,493
광주광역시	57.5	497,663	41,465	12,002
대전광역시	72.8	7,906,282	27,198	290,694
울산광역시	65.7	3,662,168	21,157	173,095
경기도	75.2	76,202,893	224,120	340,009
강원도	26.7	3,499,454	32,700	107,017
충청북도	31.3	8,774,592	38,599	227,327
충청남도	35.3	5,432,917	45,281	119,982
전라북도	23.9	6,740,436	52,772	127,728
전라남도	20.2	6,829,704	47,141	144,878
경상북도	27.8	2,885,023	55,610	51,880
경상남도	38.8	10,696,657	67,842	157,670
제주도	33.8	6,222,482	20,013	310,922
합계	(평균) 50.84	311,537,177	1,006,843	309,420

자료: 여성가족부(2006).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사립유치원 시간연장·종일반 인건비 지원금액을 감한 금액임.

나. 시·도별 보육 예산지원 근거

현재 모든 시도에서 보육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모두 별도의 조례를 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도의 11개 시도에서 보육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 대표적인 시도 조례의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 제정 시기 : 1999. 5. 10 제정, 2001. 7. 16 개정
- 주요 조항 :
 -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제 2조(책임)
 - 제 2장 보육위원회. 제 3조(설치), 제 4조(구성), 제 5조(기능), 제 6조(위원의 임기), 제 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 8조(회의), 제 9조(위원의 수당)
 - 제 3장 보육정보센터, 제 10조(설치 및 운영), 제 11조(설치기준), 제 12조(기능), 제 13조(구성), 제 14조(비용)
 - 제 4장 방과후 보육, 제 15조(보육시설의 설치), 제 16조(보육시설 기준), 제 17조(교육훈련)
 - 제 5장 비용, 제 18조(비용의 보조), 제 19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 제 6장 보칙, 제 20조(교육), 제 21조(시설의 평가), 제 22조(시행규칙)

2) 경기도 보육조례

- 제정 시기 : 2005. 6. 13 개정
- 주요 조항 :
 -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제 2조(책임)
 - 제 2장 보육위원회. 제 3조(설치), 제 4조(기능), 제 5조(구성), 제 6조(위원의 임기), 제 7조(위원의 해촉), 제 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 9조(회의), 제 10조(위원의 수당)
 - 제 3장 보육정보센터, 제 11조(설치 및 운영), 제 12조(설치기준), 제 13조(기능), 제 14조(구성), 제 15조(비용)
 - 제 4장 보육계획 및 교육훈련. 제 16조(보육계획), 제 17조(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제 18조(방과후 보육시설 기준), 제 19조(교육훈련)
 - 제 5장 비용, 제 20조(비용의 보조), 제 21조(보조금의 반환)
 - 제 6장 보칙, 제 22조(시행규칙), 부칙

<표 IV-1-4> 시·도별 보육조례 제정 현황

시·도	시·군·구	조례	제정·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정 1999. 5. 10 개정 2001. 7. 16 개정 2005. 9. 30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 관한조례	제정 200. 11. 27
	중랑구	영유아보육에 관한조례	2005. 5. 16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	제정 2003. 6. 20 개정 2005. 5. 4 개정 2006. 12. 20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제정 2003. 5. 9
	도봉구	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전문개정 2005. 10. 5
	노원구	보육위원회 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 지원에 관한조례	
	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	제정 2001. 11. 2 개정 2003. 10. 30 개정 2006. 12. 8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문개정 2006. 7. 7
	마포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 2001. 6. 25 개정 2002. 11. 1
	양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 2001. 12. 26 개정 2002. 12. 27 개정 2003. 1. 1 전문개정 2006. 10. 10
	강서구	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제정 1995. 10. 12
	금천구	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1995. 11. 22 개정 2001. 3. 15 개정 2002. 10. 29 개정 2003. 10. 13
	영등포구	보육조례	제정 2006. 6. 26
	동작구	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 관한조례	제정 1998. 8. 12 개정 2000. 6. 20 개정 2003. 6. 10 개정 2005. 5. 2 개정 2006. 6. 28
	관악구	보육조례	제정 2003. 7. 30 전문개정 2005. 12. 30
	서초구	영유아보육조례	제정 2005. 11. 22
	강남구	보육시설운영위탁에 관한조례	제정 1996. 8. 2

시·도	시·군·구	조례	제정·개정
	송파구	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05. 12. 28
	강동구	영유아보육및지원에 관한조례	제정 1997. 11. 5 개정 1998. 4. 21 개정 1999. 10. 7 개정 2003. 8. 6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보육조례	제정 2004. 7. 8 개정 2005. 2. 16 개정 2005. 6. 8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	제정 2005. 11. 1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 2002. 2. 29 일부개정 2003. 10. 27 일부개정 2005. 9. 26
	연수구	영유아보육조례	제정 2006. 1. 2
	남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제정 1993. 11. 13 1997. 12. 1 1998. 12. 5 1999. 2. 2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	제정 2004. 4. 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제정 2005. 8. 5
	서구	보육조례	제정 2002. 12. 5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보육조례	제정 2000. 10. 26
경기도	경기도	보육조례	개정 2005. 6. 13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9. 6. 25 개정 1999. 8. 28 개정 2000. 12. 30 개정 2001. 10. 17 개정 2003. 5. 22 개정 2004. 1. 12
	안양시	보육조례	제정 2003. 1. 10 개정 2003. 10. 16 전문개정 2005. 11. 16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	제정 2005. 9. 29
	동두천시	보육조례	제정 2006. 12. 8
	안산시	보육조례	제정 1997. 1. 14 개정 1997. 6. 2 개정 2001. 3. 16 개정 2001. 10. 18 개정 2005. 11. 17

시·도	시·군·구	조례	제정·개정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전문개정 2002. 4. 4	
	구리시	보육조례	제정 2004. 1. 7	
	시흥시	보육조례	제정 2001. 1. 17 개정 2001. 5. 19	
	군포시	보육조례	제정 2003. 10. 14 개정 2006. 8. 15	
	하남시	보육조례	제정 2003. 6. 5 개정 2006. 1. 6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2. 12. 16 개정 2006. 9. 26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 2004. 1. 15	
	가평군	보육조례	제정 2006. 3. 6	
	안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제정 2006. 2. 28	
	김포시	보육조례	제정 2005. 6. 17	
	강원도	강원도	보육조례	제정 2006. 12. 29
		속초시	보육조례	제정 2006. 5. 4
	충청북도	양양군	영유아보육조례	제정 2006. 1. 16
청주시		보육조례	제정 2003. 6. 11	
충청남도	충청남도	영유아보육조례	제정 2005. 10. 6 개정 2007. 1. 10	
	아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정 2006. 10. 31	
	서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정 2006. 7. 5	
전라북도	전주시	보육조례	제정 2005. 9. 29	
	익산시	보육조례	제정 2004. 2. 27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 2006. 6. 30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 2005. 8. 10	
전라남도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2. 12. 31 개정 2006. 11. 15	
	완도군	보육시설이용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2. 28	
경상북도	포항시	보육조례	제정 2006. 10. 4 개정 2007. 1. 2	
	구미시	영유아보육조례	제정 2004. 12. 10	
경상남도	-			
제주도	제주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4. 12	

2. 시·도별 유아교육 예산지원 현황 및 근거

가. 시·도별 유아교육 예산지원 현황

시·도별 유아교육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총액기준 3,33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는 지원이 전혀 없다. 원아 1인당 지원액을 살펴 보면, 전라북도가 119,566 원으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1) 서울시

서울시는 유치원 지원을 위한 자체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총 25개의 구 중 17개 구가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등 10개 구에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가 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는 강남구에서 가장 먼저(1997. 01. 10) 만들어졌으며, 동대문구에서 가장 최근(2006. 06. 22)에 만들어졌다.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들이 유치원에 지원하는 사업명칭은 유치원 교재교구비가 가장 많고, 그 밖에 교육기자재 지원, 유치원교육경비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유치원 비품·장비 구입비, 유치원 시설 개보수비, 환경개선비, 유치원 인건비,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사립유치원 연장/종일제반 운영비 지원, 시설비, 유치원 급식비(종일반), 유치원교사중식비(종일반)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 명칭 중 현재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 교사 인건비 관련 사업과 연장제 및 종일반과 관련된 지원이다.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총 25억 2,069만 3천 원이다. 구별 지원 금액은 최저 1,400만원(도봉구)에서 최고 10억 9,200만원(강남구)으로 차이가 많다. 특히 강남구는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과 사립유치원 연장/종일제반 운영비 지원 사업을 하면서 유치원에 비교적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서 유치원 지원사업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2) 부산시

부산시는 유치원 지원을 위한 자체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부산시에서 종일반교사인건비보조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 10개 구·군이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다. 6개 구·군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지원하고 있는 구·군 중 2개 구·군(연제구, 기장군)은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는 해운대구에서 가장

먼저(2005. 04. 05) 만들어졌고, 남구에서 가장 최근(2006. 09. 29)에 만들어져 모든 구·군들이 비교적 최근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기초자치단체들이 유치원에 지원하는 사업명칭은 모두 난방비이며, 남구만 난방비와 함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9개 구·군은 관내 유치원에 원당 20만원~40만원 정도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남구는 난방비와 간식비로 원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를 포함하여 부산시 기초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6억 660만원이다. 이 중 부산시가 종일반 교사 인건비 보조로 교사 1인당 월 121,500원을 지원하여 총 6억 3,2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순수하게 지원하는 금액은 7,380만원에 불과하다.

3) 대구시

대구시는 유치원 지원을 위한 자체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총 8개 구·군 중 달서구 한 곳에만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있다. 이 또한 최근(2006. 11. 01)에 만들어진 조례이다. 최근에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서인지 아직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4) 인천시

인천시는 유치원 지원을 위한 자체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총 10개 구·군 중 8개 구·군이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는 8개 구·군에는 모두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있다. 교육경비지원조례는 부평구에서 가장 먼저(2002. 11. 30) 만들어졌으며, 강화군에서 가장 최근(2006. 08. 31)에 만들어졌다.

인천시 기초자치단체들이 유치원에 지원하는 사업명칭은 농업인영유아보육비, 종일반운영지원비, 소방방염공사, 급식시설설비, 소방방염도장공사와 교육장비구입, 통학차량운전기사인건비보조, 종일반차량기사인건비보조 등으로, 소방방염공사와 기사인건비보조 등 유아들의 안전과 관련된 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에서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일반운영지원비는 관내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87,09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유치원 지원과 관련하여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인천시의 기초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총 4억 6,796만 8천 원이다. 구별 지원 금액은 최저 466만 8천 원(옹진군)에서 최고 1억 1,100만원(부평구)으로 차이가 많다.

5) 대전시

대전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대전시 대덕구는 2006년 5월 16일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에서는 경비지원의 범위를 1) 교육환경 개선비, 2) 교재·교구비, 3) 기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에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 경기도

경기도는 2005년 12월 30일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총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교육경비지원조례나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7) 강원도

강원도는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총 18개 시·군 중 3개 시·군이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의 특이한 점은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는 3개 시·군은 조례 제정과 무관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있는 3개 시·군은 유치원을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지원하려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들이 유치원에 지원하는 사업명칭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종일반운영지원, 사립유치원교재교구 지원이다. 강원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총 9천 440만원으로, 종일반운영지원, 사립유치원교재교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태백시와 횡성군은 각각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춘천시는 5,4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8)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2006년 11월 1일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지원조례안을 만들었다. 총 12개 시·군 중 6개 시·군에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있으며, 5개 시·군이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지원근거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는 5개 시·군 중 2개 시·군이 조례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3개 시·군은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편 4개의 시·군은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있으나, 유치원

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들이 유치원에 지원하는 사업명칭은 학교 숲 조성, 운동장 및 유원장 우레탄 설치, 방충설 설치,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급식설비 및 기구구입이다. 충청북도의 특징은 이러한 지원사업이 모두 병설유치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다는 점이다. 충청북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총 1,025만 9천원으로, 이 중 청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830만 9천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상당히 적다.

9)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총 16개 시·군 중 8개 시·군에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있으며, 15개 시·군이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는 계룡시에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고,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는 15개 시·군 중 8개 시·군에는 조례가 없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지원하려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충청남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유치원에 지원하는 사업명칭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차량비 지원, 도서구입비 지원, 실외놀이기구설치비 지원. 특이한 점은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는 모든 시·군이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1인 1식에 167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이상인 곳이 몇 군데 있다.

충청남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총 7억 2,118만 4천원으로, 이 중 천안시가 2억 5,473만 1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천안시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외에 차량비 지원과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10) 전라남도

전라남도에는 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2003. 10. 20)와 시행규칙(2004. 04. 01)가 있다. 이에 따라 총 22개 시·군 모두에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순천시, 광양시, 화순군이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더불어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다.

전라남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유치원에 지원하는 사업명칭은 학교급식재료 지원,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 시설운영비 지원, 특기적성강사수당 단체활동비 특수보조원인건비이다. 모든 시·군에서 학교급식재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16개 시·군에서 농어업인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다. 담양군에서는 학교급식재료, 농어업인양육비 지원과 함께 공사립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1인당 12,000원의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 사례에서의 시사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근거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로까지 연결되어 자체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이에 근거해 실제로 지원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전라남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총 24억 459만 7천 원으로, 서울시에 이어 2번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농어업인자녀양육비 지원금액(이 부분은 정부의 국고 사업으로 알고 있음)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15억 2,339만 4천원이다.

11)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근거는 없으나, 지자체별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장 많이 있다. 총 20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고, 14개 시·군에 급식 관련 조례가 있으며, 16개 시·군에 인제 육성 및 장학재단 관련 조례가 있다. 20개 시·군 모두가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기초자치단체들이 만 4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5개의 시·군이 놀이시설, 환경개선, 프로그램구입,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사업명칭으로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상남도에는 급식관련 조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대한 급식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제육성 및 장학재단 조례 또한 유치원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총 12억 5,392만 5천원이다. 이 금액은 1월에서 9월까지 만 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금액으로 나머지 3개월을 추가하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2) 제주도

제주도는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근거가 없으며, 기초자치단체도 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놀이장 고무블럭설치, 잔디운동장정비사업, 운동장마사지 및 체육기설설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환경정비와 관련된 사업이고, 초등학교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유치원에만 고유하게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많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당 500만원의 교재교구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표 IV-2-1> 시·도별 유아교육 관련 원아 1인당 지원액(2006년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총 예산액(천원)	원아수(명)	1인당 지원액(원)
서울특별시	94.3	3,337,743	85,764	38,918
부산광역시	70.2	606,600	38,345	15,820
대구광역시	70.7	0	28,488	0
인천광역시	69.2	467,968	28,337	16,514
광주광역시	57.5	0	16,354	0
대전광역시	72.8	0	21,346	0
울산광역시	65.7	0	16,605	0
경기도	75.2	1,010,472	133,034	7,596
강원도	26.7	94,400	15,275	6,180
충청북도	31.3	10,259	16,250	630
충청남도	35.3	721,184	21,141	34,113
전라북도	23.9	0	19,743	0
전라남도	20.2	2,404,597	20,111	119,566
경상북도	27.8	0	35,079	0
경상남도	38.8	1,238,480	44,268	27,977
제주도	33.8	189,500	5,672	33,410
합계	(평균) 50.84	10,081,203	545,812	18,470

자료: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시·도별 담당자로부터 수합한 자료임.
1인당 지원액 산출시에는 지역에 따라 공, 사립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별 공, 사립원아수를 기준으로 함.

나. 시·도별 유아교육 예산지원 근거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는 다양한 형태로 공사립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나 시군구 차원에서 교육지원조례가 있다. 한편 대구, 대전, 경기도는 교육지원조례는 있으나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각각의 시도들이 어떠한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사업명칭을 가지고 어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2> 시·도별 유아교육 지원 근거(2006년도)

시도	시도차원 자체근거	기초자치단체 조례 현황	사업종류	비고
서울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위한 교육지원조례 (2006. 7. 19)	총 25개 구 중 25개 구 지원 (10개 조례)	· 교재교구비 · 교육기자재, 장비 · 교육경비지원 · 환경및시설개보수 · 교사처우개선비 · 연장/종일반운영지원 · 종일반급식비 · 종일반교사중식비	
부산	-	총 16개 구·군 중 10개 구 지원 (14개 조례)	· 종일반교사인건비보조 · 간식비 · 난방비	
대구	-	총 8개 구(7개 규정, 9개 조례)	·	· 대구광역시 달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2006. 11. 01)
인천	-	총 10개 구 중 8개 구·군 지원	· 농업인영유아보육비 · 종일반운영지원 · 소방방염공사 · 급식시설설비 · 교육장비구입 · 통학차량운전기사인건비보조	
대전	-	총 5개 구 지원		·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06. 05. 16)
경기	교육지원 조례 (2005. 12. 30)	총 31개 시·군 중 12개 (8개 규정, 8개 조례)		
강원	-	총 18개 시·군 중 3개 시·군 지원	· 종일반운영지원 · 교재교구지원	· 지원한 3개 시·군은 조례 제정과 무관하게 지원 · 3개 시·군은 조례가 있으나 지원 내역 없음
충북	교육지원조례안 (2006. 11. 01)	총 12개 시·군 중 5개 시·군 지원 (6개 조례)	· 공립학교숲조성 · 공립유원장우레탄설치 · 공립방송실설치 · 공립 입학금 및 수업료 · 공립급식설비 및 기구구입	· 초등학교와 함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모든 지원대상은 병설유치원임

시도	시도차원 자체근거	기초자치단체 조례 현황	사업종류	비고
충남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04. 11. 10)	총 16개 시·군 중 15개 시·군 지원	· 공립차량비지원 · 도서구입비지원 · 학교급식식품비지원 · 공립실외놀이기구설치	· 대부분이 식품비 지원
전남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 관한 조례 (2003. 10. 20)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2004. 04. 01)	총 22개 시·군 중 22개 시·군 지원	· 학교급식식재료지원 · 농업인자녀양육비지원 · 특기적성강사수당 · 단체활동비 · 특수보조원인건비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은 지자체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업이 포함된 금액임 · 학교급식지원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조례는 다른 곳보다 일찍 만들어진 경향이 있음
경남	-	총 20개 시·군 중 20개 시·군 지원 (18개 조례)	· 놀이시설 · 교육여건, 환경개선 · 만4세아섯째아이후유아교육비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구입	· 지자체별로 교육지원조례 가장 많음
제주	-	총 2개 시 중 2개 시 지원	· 공립놀이장고무블럭설치 · 공립잔디운동장정비 · 공립운동장정비 · 사립교재교구비	· 제주시에서의 지원은 초등학교와 함께 병설유치원을 지원 · 서귀포시에서는 4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재교구비를 5백만원씩 지원

주: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는 지원 실적 없음.
경상북도는 자료 수할 미흡.

3. 지자체의 유아교육 지원 우수사례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사례를 살펴본 결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부산시와 경기도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화성시, 대전시 대덕구가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부산시가 시차원의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오래전부터 사립유치원 종일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도차원의 교육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하였

으며 유치원을 조례속 지원대상에 명시하여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경기도 노력은 경기도내에서의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하여 국가사회적 문제인 사회적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는 점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살펴보면,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에는 1997년부터 구의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지원액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교사 처우 개선비(1인당 월100천원), 연장 종일제반운영비(1학급당 월700천원, 1개원당 4개학급까지) 지원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지원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서울시 서초구는 조례없이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에는 시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사립유치원교사인건비(1인당 월 100천원), 사립유치원 아동입학금(1인당 30천원), 유치원 학부모교육 운영비 지원은 물론 화성 8경투어 등 지역 특색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 것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대전시 대덕구의 경우에는 아직 실제적인 지원은 없으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다.

<표 IV-3-1> 시·도별 유아교육 지원 우수사례 종합표

구분	시·도	특징	비고
광역자치단체	부산시	* 조례없이도 사립유치원 종일반교사 인건비(1인당 월 125천원) 지원	- 우수사례 - 조례 없이 지원
	경기도	* 16개시·도중 시·도차원의 교육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 지원대상에 유치원을 명시하여 확실한 근거 마련 - 각 시·군별로 유아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에서의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함	- 우수사례 - 조례에 유치원 명시
기초자치단체	서울시 강남구	* 1997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으며, 서울시 지원액중 가장 많은 금액 지원 - 현장의 요구가 많으며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지원함.	- 우수사례 - 조례제정, 실제 지원 우수
	서울시 서초구	* 조례없이도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1인당 월500천원) 지원	- 우수사례 - 조례 없이 실제지원

구분	시·도	특징	비고
	경기도 화성시	* 조례 제정되어 있음. - 사립유치원교사인건비(1인당 월 100천원), 사립유치원 아동입학금(1인당 30천원), 유치원학부모교육, 화성 8경투어 등 지역특색프로그램 개발 노력 보임.	- 우수사례 - 특색프로그램개발 및 실제 지원우수
	대전시 대덕구	- 대전시 차원의 조례가 없고, 실제 지원도 없음. - 구 차원에서 사립유치원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근거)은 유일함.	- 우수사례 - 유치원 - 별도조례 제정

4. 지자체의 유아교육 지원 특성 및 문제점

가. 특성 요약

- 1) 지역간, 지역내 유아교육 지원 비용의 차이가 큼
 - 일반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역(시·도별, 시·군·구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아교육지원 비용도 지역별 차이가 큼.
 - 총 16개 시·도중 10개 시·도에서 유아교육 지원
 - 서울시가 총액기준 33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북이 1천만원으로 가장 적음.
 - 서울시의 경우, 25개구 모두 지원
 - 총액기준 강남구가 10억 9천2백만원으로 가장 많고(서울시 총액의 약 33% 차지), 도봉구가 1천4백만원으로 가장 적게 지원
 - 1인당 지원액도 강남구가 34만4천원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가 3천3백원 수준으로 무려 89배의 격차 존재

→ 이는 거주지역에 따라 유아들이 받는 혜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특히, 연간 일회성 지원이 있는가 하면 매월 고정액으로 지원되어 실질적인 지원효과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2) 유아교육비용 지원 근거의 유무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으나, 최근들어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이 활성화되고 있음

- 시·도 차원의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
 - 경기도('05.12.30), 서울시('06.7.19), 충청북도('06.11.1)
- 234개 시·군·구의 교육조례 제정 비율은 약 38%에 해당함
- 반드시 조례가 있는 경우에만 초·중등 및 유아교육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님.
 - 강원도내에서는 조례가 있는 3곳은 지원이 없으며, 조례가 없는 3곳이 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사업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있는 곳도 있음.
- 조례가 있는 경우에도
 - 초·중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서울시교육조례),
 - 사업유치원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대전대덕구사업유치원지원조례)라도 경비지원의 제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움.
 - 시·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조례에 사업유치원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근거도 중요하겠으나, 그 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유아교육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음.

3) 유아교육 지원사업의 종류는 환경개선, 교사인건비, 급간식비 지원 등이 동일 지역내에서는 유사한 경향이 있음

- 대부분 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개보수, 종일반 운영 지원, 교사 인건비 보조, 유아의 급간식비가 대부분임
 - 부산시 : 난방비 지원
 - 인천시 : 통학차량 운전기사 인건비 보조
 - 충청북도 : 시설·설비에 대한 지원
 - 충청남도·전라남도 :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표 IV-4-1> 유아교육 지원 사업 종류

대상	지원 사업 종류	
기관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	- 교육경비 보조 지원 - 연장제/종일반 운영 지원 - 교재교구 및 도서구입비 지원 - 난방비 지원	- 교육정보화 사업 - 환경개선 및 시설개보수비 지원 - 교육기자재 및 장비 구입 지원 - 놀이시설 및 운동장(바닥재) 개선(공립)
교사 및 강사	-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종일반교사 종식비 보조 - 특기적성강사수당	- 종일반교사 인건비 보조 - 특수보조원 인건비 - 통학차량 운전기사인건비 보조(공립)
유아	- 종일반유아 급식비 지원 - 단체활동비	- 간식비 지원

➔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유아교육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수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 동일하게 선정·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나. 문제점

1)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과 제2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원 범위와 지원 방식이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현장에서는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짐

※ 유아교육법과 동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교육감을 주로 의미함. 이 문맥에서는 시·도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제32조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에 나타나 있음.

2)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투자여지가 미흡함

○ 유아교육예산은 시·도별 대응투자(50:50)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의 투자여지가 낮아 대응투자예산 확보가 어려움.

- 일반자치단체의 경우 경쟁적으로 보육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반면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제정 등에는 소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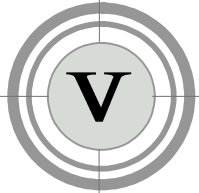
- 전국에서 사립 유치원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곳은 대전시대덕구 하나임.
-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도 대부분 초·중등학교 지원 중심이며 유치원은 제외됨.

3) 일반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심함

- 2006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시·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나, 그 이전까지는 주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만 학교를 직접 지원할 수 있었던 관계로, 재정여건이 우수한 자치구는 각급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이 더욱 향상되는 반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학교 환경 개선을 지원할 여력이 없어, 자치구간 교육환경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문제점 있음.

4)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한 경우도 상위 법적 근거가 미약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고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도 교육·학예에 관해서는 그 심의의결의 제한적인 독자성을 인정하고 집행을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그 결과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의 집행도 교육감의 관할하에 들어가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더이상 일반 자치단체장의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상의 지원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조례들은 같은 지역의 교육에 대한 포괄적 예산 지원의 근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내용들임.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 방안

1.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2.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3. 유아교육 지원사업의 선정 및 활성화

1.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 차원의 유아교육경비지원 조례 제정

- 유아교육·보육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라는 인식을 제고하여, 지역인적자원 개발의 측면에서 해당 지역내 영유아들에게 제공되는 교육·보육 서비스의 형평성과 균등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사업 지원에 대한 의지에 따라 보조금 금액 차이가 커지는 상황이므로 일반 초·중등학교급과 동일하게 유아교육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그 첫 번째 단계는 유아교육경비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것임.
-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1안 :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조례 제정
 -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초·중등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므로, 지역내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와 유치원의 질적 수준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서는 유치원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
 - 2안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를 포함하는 조례 제정
 - 교육경비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유아교육에 지원이 전혀 없는 시·군·구가 많이 있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유치원도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해야 함.
 - 유치원(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개선, 교재교구 및 기타 운영 지원 사업 또는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나. 광역자치단체(시·도청) 차원의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 및 개정

-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단체장의 관심과 노력에 달렸다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기초자치단체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의 지원 또는 시·도내 전역에 걸쳐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할 사업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이 필요함.
- 특히, 시·도내의 자치구의 재정확보 수준에 따라 관내 유치원 지원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도차원의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의 미래 발전과 인력양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추진해야 할 복지사업이나 유아교육 기본적인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해야 함. 교육재정이 부족하고 지방의 대응투자가 미흡해 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길 경우 그 해당 사업의 축소는 당연한 것임.

-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만 5세아 무상교육,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및 국가사회적 요구에 따른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은 국가차원의 법적 근거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교육경비 지원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시·도차원에서는 유치원 별도의 조례 제정이 어려운 관계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급을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는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다음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1안 : 시·도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 필요
 - 전국적으로 3개의 시·도(서울시, 충청북도, 경기도)만이 시·도차원의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한 상태임.
 - 2006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각 시·도에서 자체적인 유아교육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치원을 포함하는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지원 대상에 유치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지원사업의 종류에 유치원의 교육환경개선 및 운영경비, 종일반 운영 지원 포함시켜야 함.
 - 2안 : 기존 교육경비지원조례의 개정 필요
 - 서울시와 충청북도와 같이 이미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원 대상학교에 유치원이 제외된 경우는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 즉, 대상 학교급에 유치원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보조사업의 내용에도 유치원의 교육환경개선 및 운영경비, 종일반 운영 지원을 포함시켜야 함.

다. 시·도교육청(교육감)의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본 연구는 일반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재정 지원을 활성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나, 이와 함께 유치원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감(장)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함.
- 이에 각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재정지원 대상을 사립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조례의 상위 법적 근거 필요

- 유아교육과 관련한 조례들의 상위법적 근거는 사업유치원과 종일반운영에 대한 일반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근거를 교육부령이 정한 것 외에는 없음.
- 기존에 제정된 교육경비지원 조례들은 사실상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치적 필요와 판단에 따라서 형성된 것들임. 즉, 교육 관련 조례들은 사실상 상위법령들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례들을 제정한 것은 그만큼 지역내에서 정치적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임.
- 그렇다면 일반자치단체장의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오히려 그들의 정치적·선심성 전략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상위 법적 근거 마련은 다음과 같이 제안될 수 있음.
 - ▶ 첫째,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그 제12조에 3항을 추가하고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자치단체장은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관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상위 법적 근거 규정 신설
 - ▶ 둘째, 역시 국가 차원에서 현재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 조와 33 조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유치원 소요경비의 지원 근거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자체를 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갖게 함.

마.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 모색

-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 현재 규정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자체수입에 대비한 인건비도 확보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도 많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경우도 지역주민의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의 제한사항을 풀기로 교육부와 행자부가 합의하였음. 곧 제한사항을 삭제하는 입법이 있을

-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정비율을 유아교육에 투자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하고 추가 확보된 예산을 유아교육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학교운영비 산정기준 학생수에서 사업 유치원 학생수를 제외하고 있음. “다만, 사업 유치원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자치단체의 비법전입금 및 교육경비보조 등 교육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으로 특별교부금 중 일부를 매칭펀드로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안 모색
 - 일반자치단체의 투자가 없는 경우 지원을 하지 않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비율로 시·도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교육투자비는 늘어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중 시·도세 총액 전입금의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
 - 시·도세 전입금은 주민들이 내는 소득세 중 서울시는 특별시 총세액의 10%, 광역시와 경기도는 총세액의 5%, 그 밖의 시·도는 3.6% 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재원인데 이를 인상하여 유아교육에 사용하자는 것임.

2.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가. 연계협력의 목적

-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해당 지방의 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감 및 교육장과 연계 협력체제를 구축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지방교육의 발전에 있음.
-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연계협력의 목적 또한 이들간의 상호연계협력이 결과적으로 지방의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체제개발 및 운영의 당위성이 상실될 것임.
- 그렇다면 지방 유아교육의 발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규정하고, 아울러 이러한 지방유아교육의 발전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세부목표가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유아교육 개선 사항에 대해 교

육감(혹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이를 지원 혹은 협력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음. 즉,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관할구역안에서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검토하여 이를 교육감(혹은 교육장)에게 전달하고, 대신 이들 요구를 교육청이 원만히 수용하는 데 필요한 행정 혹은 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해야 함.

- 이와 같은 차원에서 연계 협력의 목적(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의 유아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개선한다
 - 지역내 균형적인 유아교육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한다
 -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조성한다.
 - 유아교육복지를 증진한다.

나. 연계협력 사항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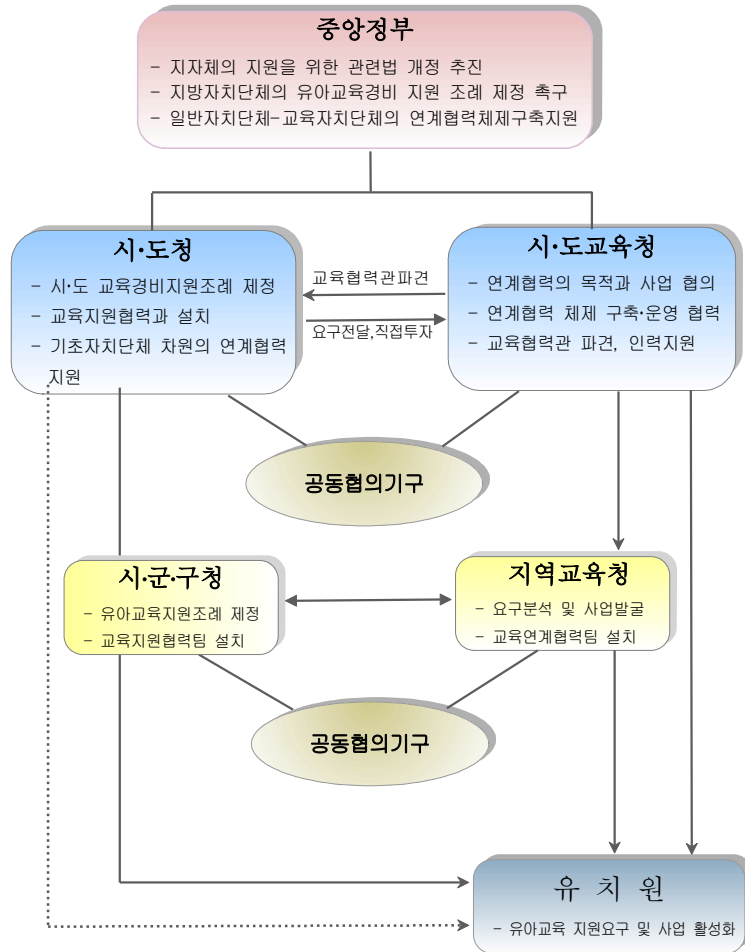
- 광역자치단체 수준
 - 국가육아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활성화 사업
 - 지역내, 도·농간 균등한 유아교육기회제공을 위한 사업
 -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사업
 - 유아교육 복지 증진 사업
 -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유아교육지원사업
 - 광역 차원의 각종 유치원 관련 지역행사 공동 주관 사업
 - 기타 교육감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치원 운영지원 사업
- 기초자치단체 수준
 - 유치원의 급식 시설·설비 사업
 -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지원 사업
 -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사업
 -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 기초 차원의 각종 유치원 지역행사 공동 주관 사업
 - 기타 교육장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치원 운영 지원 사업

다. 연계 협력 추진 공동조직 구성 및 운영체제 개발

-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동 협의 혹은 상호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시·도지사와 교육감간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공식협의체(공동협의기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동 기구는 지방별로 다르게 설치할 수 있으나 혼란을 방지하고 전국적인 공통 기준을 돕으로써 공교육의 사·도간 격차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중앙 정부의 수준에서 먼저 그 구체적인 목적·구상·방법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법령화하도록 함.

라. 파견인력 및 교육지원·연계 협력 전담과(팀)의 설치

- 시·도교육청(또는 지역교육청)과 시·도청(또는 시·군·구청)간의 연계협력은 결국 사람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상호 관련 인력을 파견하는 등의 교류를 활성화 시켜 상호 이해와 의사소통의 원활화를 추구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교육협력관제를 필히 두고 이와 동시에 관련 인력의 상호 교환·차근무제 등도 개발·시행함.
- 양 기관간 상호 연계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관에서 이를 주도하는 담당팀이 반드시 필요함.
 - 기본적으로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내에 교육지원 연계협력 전담과의 설치 필요
 - ※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청내에 교육협력과를 설치해 놓았으며, 영어마을 운영과 초·중등지원을 위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음.
 - ※ 최근 서울시에도 교육지원반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 특히, 유아교육 지원 업무를 주도적,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초자치단체 수준(시·군·구청과 지역교육청)에서 해당 기관내에 전담팀을 설치해야 함.
 - 단, 이러한 팀조직은 유아교육지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중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연계 업무를 모두 관장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그림 V-2-1]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연계협력 체제 모형

3. 유아교육 지원사업의 선정 및 활성화

가. 유아교육 지원사업 선정의 배경

- 국가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산시대를 맞아 영유아기부터 질 높은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중요함.
- 생애 초기에 부모의 가정환경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실질적인 학습기회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아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함.
- 학부모가 전적으로 교육비를 부담하는 사립유치원의 유아분담율이 높은 관계로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이 필요함.
- 맞벌이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유치원의 보육기능 요구 증가에 따른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필요함.

▶ 유치원의 보육기능 미흡

- 운영시간이 짧고, 방학기간이 길어 직장여성의 경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기가 어려움.
- 평균 운영시간(2005) : 사립유치원 9시간 58분, 민간보육시설 11시간 29분

<표 V-3-1>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종료 시간(2004)

구 분	13:01~15:00	15:01~17:00	17:01~19:00	19:01~
공립유치원(%)	62.8	25.1	5.2	1.8
사립유치원(%)	38.7	4.5	52.7	3.8

<표 V-3-2> 유치원 방학기간(2005)

구 분	5일 미만	6~14일	15~20일	21일 이상
공립유치원	123(3.1%)	54(1.3%)	3(0%)	3,831(95.5%)
사립유치원	184(4.8%)	1,373(36.0%)	941(24.7%)	1,318(34.5%)

▶ 유치원 종일반 운영 현황(2006)

<표 V-3-3> 유치원 종일반 운영 현황(2006)

	계			국·공립			사립		
	원수	학급수	원아수	원수	학급수	원아수	원수	학급수	원아수
계	5,930	11,912	265,125	3,011	3,695	62,205	2,919	8,217	202,920
대도시	1,826	4,222	96,097	357	405	8,547	1,469	3,817	87,550
중소도시	2,028	4,399	109,777	971	1,287	25,895	1,057	3,112	83,882
농어촌	1,808	2,968	54,589	1,437	1,739	24,424	371	1,229	30,165
도서벽지	268	323	4,662	246	264	3,339	22	59	1,323

- 2006년 4월 현재, 유치원 종일반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유치원의 71.5%에 달하는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전체 학급수의 과반수(51.8%)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3~5세 취원아의 48.6%만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특히, 유아교육기관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농·어촌 벽지 영유아의 교육과 보호는 유치원의 종일반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치원 종일반은 낙후지역 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활성화되어야 함.

▶ 유치원 종일반 운영상의 문제점

※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종일반 교사 확보 및 인건비 확보 어려움
- 종일반 운영을 위한 시설·설비가 미흡함

< 종일반 운영 관련 선행 연구 >

- 정미라 외(1999).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개발 연구: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 장영림 외(2003).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에 따른 교원배치기준 개선 방안 연구: 교육부정책연구과제.
- 나경 외(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3): 유치원실태조사보고 여성부

나.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및 지원 활성화

- 각 시·도별로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 각 시·도별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간 운영 및 방학일에도 학부모들이 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음.
 - 종일반 교육과정은 유아들이 가지게 되는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배려하여 운영하며, 오후에는 오전과 연계성 있는 보육활동으로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 인적자원 육성 및 여성의 육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일반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렇게 볼 때,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은 특히, 맞벌이 가정의 부족한 자녀 교육 및 보육 환경·자원을 보완하고 지원해 주는 지역사회 주민·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역주민의 교육 만족도 제고와 지역 인적자원의 조기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일반자치단체의 유치원 종일반 지원을 활성화해야 함.
-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
 - 현장에서는 종일반 교사 인건비 또는 인력 지원과 종일반 운영을 위한 시설·설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종일반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지원
 - 활동실, 수면실, 세면실, 화장실
 - 바닥 난방 설비, 냉난방 시설, 방·온 샤워시설 등
 - 조리실, 냉장고 및 취사설비 등
 - 종일반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
 - 부모, 유아는 물론 교사 자신의 근무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담 인력 지원 필요
 - 서울시 에듀케어의 경우에는 종일반 담임교사 외에 두명의 전담교사를 투입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전담 인력의 지위와 신분의 안정적 보장 필요

부 록

부록 1. 시·도별 유아교육 지원 사례

부록 2. 교육경비조례 및 유아교육지원 조례(예)

부록 3. 보육조례(예)

<부록 1> 시·도별 유아교육 지원 사례

부산시(2006)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부산광역시	-	종일반교사 인건비 보조	1인당/월 121,500원	종일제 운영유치원 367개원	532,800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6. 09. 29)	난방비 및 간식비	원당 50만원	관내 사립유치원 19개원	9,500
동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5. 12. 26 제정, 2006. 06. 26 개정)	난방비	원당 30만원	관내 유치원 28개원	8,400
금정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5. 11. 04)	난방비	원당 40만원	관내 유치원 25개원	10,000
연제구	-	난방비	원당 30만원	관내 유치원 17개원	5,100
기장군	-	난방비	원당 30만원	관내 유치원 19개원	5,700
수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6. 01. 01)	난방비	원당 30만원	관내 유치원 22개원	6,600
영도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6. 03. 17)	난방비	원당 20~30만원	관내 유치원 12개원	3,700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6. 06. 06)	난방비	원당 25~35만원	관내 유치원 34개원	10,800
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6. 02. 01)	난방비	원당 35만원	관내 유치원 10개원	3,500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5. 04. 05 제정, 2006. 06. 30 개정)	난방비	원당 30만원	관내 유치원 35개원	10,500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	-	-	-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2006. 04. 12)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6. 02. 17)	-	-	-	-
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6. 03. 20)	-	-	-	-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6. 05. 12)	-	-	-	-
강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6. 05. 10)	-	-	-	-
사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6. 04. 24)	-	-	-	-
계					606,600

대구시(2006)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달서구	교육경비지원조례 (2006. 11. 01)	-	-	-	-
계					

인천시(2006)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옹진군	교육경비지원조례 (2005. 03. 15)	농업인 영유아보육비	1인당 259,330원	농업인 유아 18명	4,668
남구	교육경비지원조례 (2005. 10. 4)	종일반운영 지원비	1인당 87,090원	관내 사립유치원 28개원 유아 643명	56,000
중구	교육경비지원조례	소방방역공사	원당	관내	7,500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2005. 04. 19)		2,500,000원	사립유치원 3개원	4,800
		급식시설설비	원당 2,400,000원	관내 사립유치원 2개원	
부평구	교육경비지원조례 (2002. 11. 30)	소방방염도장 공사및 교육장비구입	원당 3,000,000원	관내 사립유치원 37개원	111,000
남동구	교육경비지원조례 (2003. 12. 5)	통학차량 운전기사 인건비보조	원당 3,000,000원	관내 사립유치원 34개원	102,000
연수구	교육경비지원조례 (2004. 2. 13)	통학차량 운전기사 인건비보조	원당 2,000,000원	관내 사립유치원 25개원	50,000
계양구	교육경비지원조례 (2003. 08. 08)	종일반 차량기사 인건비보조	원당 2,800,000원	관내 사립유치원 25개원	70,000
서구	교육경비지원조례 (2003. 08. 02)	종일반 차량기사 인건비보조	원당 2,000,000원	관내 사립유치원 31개원	62,000
강화군	교육경비지원조례 (2006. 08. 31)	-	-	-	-
계					467,968

경기도(2006)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	-	-	-
성남시	시·군및자치구의교육 경비보조에관한규정	-	-	-	-
안양시	교육경비지원조례 (2003. 10. 31)	-	-	-	-
부천시	교육경비지원조례 (2003. 10. 31)	-	-	-	-
광명시	교육경비지원조례 (2003. 11. 06)	-	-	-	-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평택시	시·군및자치구의교육 경비보조에관한규정	-	-	-	-
안산시	교육경비지원조례 (2005. 01. 05)	-	-	-	-
군포시	시·군및자치구의교육 경비보조에관한규정	-	-	-	-
의왕시	시·군및자치구의교육 경비보조에관한규정	-	-	-	-
화성시	교육경비지원조례 (2005. 12. 23)	-	-	-	-
오산시	교육경비지원조례 (2006. 10. 09)	-	-	-	-
광주시	교육경비지원조례 (2006. 10. 31)	-	-	-	-
하남시	시·군및자치구의교육 경비보조에관한규정	-	-	-	-
안성시	시·군및자치구의교육 경비보조에관한규정	-	-	-	-
시흥시	교육경비지원조례 (2004. 01. 12)	-	-	-	-
구리시	시·군및자치구의교육 경비보조에관한규정	-	-	-	-
계					

강원도(2006)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춘천시	-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지원	1청당 54,400,000원	교육청 1개청 (공사립지원)	54,400
태백시	-	종일반 운영 지원	1원당/ 20,000,000원	1개원	20,000
횡성군	-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	1원당/ 5,000,000원	4개원	20,000
강릉시	교육경비지원조례 (2004. 01. 13)	-	-	-	-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동해시	교육경비지원조례 (2006. 10. 13)	-	-	-	-
정선군	교육경비지원조례 (2006. 05. 01)	-	-	-	-
계					94,400

충청북도(2006)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청주시	교육경비지원조례 (2004. 11. 19)	학교 숲 조성	1개원당 76,000원	병설유치원 53개원	4,028
		운동장 및 유원장 우레탄 설치	1개원당 106,000원	병설유치원 33개원	3,498
		방송실 설치	1원당 9,000원	병설유치원 87개원	783
제천시	교육경비지원조례 (2005. 07. 08)	입학금 및 수업료	1인당 50,700원	백운초 병설유치원 2명	101
보은군	-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1인당 83,000원	판동초 병설유치원 3명	249
영동군	-	입학금 및 수업료	1인당 38,400원	병설유치원 7개원 유아 20명	768
음성군	-	급식설비 및 기구구입	1인당 10,400원	수봉초 병설유치원 유아 80명	832
충주시	교육경비지원조례 (2006. 01. 10)	-	-	-	-
청원군	교육경비지원조례 (2006. 02. 23)	-	-	-	-
진천군	교육경비지원조례 (2006. 11. 06)	-	-	-	-
단양군	교육경비지원조례 (2006. 입법예고)	-	-	-	-
계					10,259

충청남도(2006)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충청남도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2004. 11. 10)	-	-	-	-
천안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6. 10. 17)	차량비 지원	1,360,000원 * 10월	위례초등병설 유치원 (23명)	13,600
		도서구입비 지원	10,000원 * 900권	일봉유치원 (156명)	10,000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2004. 11. 30)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인(1식) 167원	7,689명	231,131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 (2005. 02. 15)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인(1식) 167원	1,449명	43,557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5. 05. 26)	-	-	-	-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2005. 05. 26)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인(1식) 167원	1,408명
아산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2006. 08.)	-	-	-	-
		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 (2004. 12. 28)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인(1식) 167원	1,361명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5. 01. 28)	실외놀이기 구설치	15,000,000원	부석초등 병설유치원 (15명)	15,000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조례 (2005. 04. 08)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인(1식) 236원	1,726명
논산시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 관한조례 (2005. 04. 30)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인(1식) 167원	1,350명	40,581
금산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6. 09. 29)	-	-	-	-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 관한조례 (2006. 01. 05)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인(1식) 167원	512명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연기군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2005. 05. 12)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인(1식) 음 795원, 면 320원	378명	33,000
부여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관한조례 (2005. 01. 01)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인(1식) 167원	780명	23,447
서천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6. 08. 10)	-	-	-	-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관한조례 (2005. 07. 29)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인(1식) 167원	385명	11,573
청양군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2005. 07. 15)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인(1식) 167원	313명	9,409
홍성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관한조례 (2005. 04. 15)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인(1식) 167원	948명	28,497
예산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6. 11. 02)	-	-	-	-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조례 (2004. 07. 09)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인(1식) 167원	1,061명	31,894
태안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조례 (2005. 05. 30)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인(1식) 200원	637명	22,932
당진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관한조례 (2005. 08. 17)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인(1식) 167원	1,085명	32,615
계룡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6. 04. 20)	-	-	-	-
계					594,837

전라남도(2006)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전라남도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	-	-	-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2003. 10. 20)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시행규칙 (2004. 04. 01)	-	-	-	-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2006. 10. 16)	-	-	-	-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2004. 10. 02)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	공사립유치원 49개원	221,899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시행규칙 (2004. 12. 06)				
여수시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2004. 11. 18)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1인당 3~4세 28,000원, 5세 56,000원	공사립유치원 원아 106명	41,097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1인당 69,000원	공사립유치원 원아 2,688명	186,279
순천시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2005. 03. 31)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1인당 385원	공사립유치원 원아 54명	230,176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시행규칙 (2006. 03. 31)				
	교육환경개선포 지원에관한조례 (2004. 02.24)	-	-	-	-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	공사립유치원	26,778
나주시	학교급식비지원 조례 (2004. 11. 20)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1인당 공립 420원, 사립 358원	공사립유치원 원아 865명	69,049
	학교급식비지원 조례시행규칙 (2004. 11. 20)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	공사립유치원 원아 34명	10,672
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04. 10. 06)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	공사립유치원 원아 2,614명	126,806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5. 11. 30)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 (2006. 01. 26)	-	-	-	-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	공사립유치원 원아 1,800명	170,000
담양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06. 01. 26)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	공사립유치원	30,631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1인당 361,000원	공사립유치원 원아 298명	134,711
	-	시설운영비 지원	1인당 12,000원	공사립유치원 원아 753명	9,036
곡성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04. 12. 10)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	공사립유치원 8개원	23,285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4. 12. 10)				
	-	특기적성강 사수당	-	공사립유치원 1개원	19,800
	-	단체활동비	-	공사립유치원 1개원	808
	-	특수보조원 인건비	-	공사립유치원 1개원	9,500
	구례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04. 12. 06)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1인당 385원	공사립유치원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고흥군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 관한조례 (2006. 08. 02)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	공사립유치원	32,017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2004. 12. 20)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	공사립유치원	3,920
보성군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 관한조례 (2004. 08. 13)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	공사립유치원	47,772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2004. 08. 13)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1인당 661,000원	공사립유치원 원아 69명	45,627
화순군	학교급식비지원 조례 (2005. 05. 09)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1인당 385원	공사립유치원 원아 366명	44,422
	학교급식비지원 조례시행규칙 (2005. 08. 16)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 (2005.11.14)	-	-	-	-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	공사립유치원	8,981
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 관한조례 (2004. 12. 30)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1인당 401원	공사립유치원 원아 483명	34,869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	공사립유치원	58,109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강진군	학교급식비지원 조례 (2004. 10. 07)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1인당 385원	공사립유치원 원아 255명	17,672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	공사립유치원	17,544
해남군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2004. 10. 07)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1인당 383원	공사립유치원 원아 761명	52,463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	공사립유치원	146,958
영암군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2004. 10. 28)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	공사립유치원	35,898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	공사립유치원	14,492
무안군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2004. 10. 04)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1인당 385원	공사립유치원 원아 366명	27,485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시행규칙 (2004. 10. 04)				
함평군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2004. 03. 22)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1인당 410원	공사립유치원 13개원	14,086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공립 3-4세 28,000원, 5세 56,000원 / 사립 3-4세 79,000원, 5세 158,000원	공사립유치원 원아 294명	10,156
영광군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2004. 12. 10)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1인당 377원	공사립유치원 원아 517명	35,167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장성군	학교급식식재료 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2004. 01. 15)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1인당 371원	공사립유치원 원아 574명	40,610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	-	10,583
완도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등에관한조례 (2004. 12. 27)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1인당 66,000원	공사립유치원 원아 338명	41,778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등에관한조례시행 규칙 (2005. 04. 04)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	-	-	9,061
진도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관한조례 (2005. 01. 14)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	공사립유치원	22,454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관한조례 시행규칙 (2005. 03. 29)				
신안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관한조례 (2005. 01. 08)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1인당 56,880원	공사립유치원 원아 240명	13,653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1인당 803,300원	공사립유치원 원아 34명	27,312
계					2,404,595

경상남도(2006)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창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2005. 10. 31)	놀이시설	놀이시설 1세트	창원한별 유치원(공립)	10,800
		만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	-	-	250,265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학교급식지원 조례(2004. 11. 20)	-	-	-	-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조례 (2005. 12. 30)	-	-	-	-
마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2005. 08. 11)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30세트	개나리의외 30개원	80,000
		만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	-	-	187,658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관한조례 (2005. 12. 26)	-	-	-	-
진주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2005. 09. 07)	만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	-	-	105,634
	학교급식지원조례 (2004. 04. 28)	-	-	-	-
진해	-	만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	-	-	32,870
	교육경비및식품비 조에관한조례 (2006. 05. 18)	-	-	-	-
	인재육성장학재단지 원조례 (2005. 06. 27)	-	-	-	-
통영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2006. 02. 15)	만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	-	-	47,405
	인재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2006. 1. 12)	-	-	-	-
사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2006. 01. 10)	만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	-	-	15,982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관한조례 (2006. 01. 27)	-	-	-	-
	인재육성 장학기금조성및 운용조례 (2003. 04. 09)	-	-	-	-
김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2005. 07. 08)	만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	-	-	114,699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관한조례 (2004. 10. 26)	-	-	-	-
밀양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2005. 12. 07)	만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	-	-	31,688
	학교급식식품비 사용지원에관한 조례 (2006. 04. 28)	-	-	-	-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2002. 12. 31)	-	-	-	-
거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2006. 01. 06)	만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	-	-	49,614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관한조례 (2005. 03. 16)	-	-	-	-
	장학기금설치및 운용조례 (2006. 1. 6)	-	-	-	-
양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2003. 12. 02)	만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	-	-	50,840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관한조례 (2005. 07. 18)	-	-	-	-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의령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2006. 10. 의회통과)	만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	-	-	641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조례 (2006. 10. 의회통과)	-	-	-	-
	장학기금설치및 운용조례 (2003. 11. 15)	-	-	-	-
함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2006. 01. 12)	만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	-	-	18,464
창녕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2006. 03. 09)	만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	-	-	147,382
	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 관한조례 (2003. 7. 14)	-	-	-	-
고성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2005. 11. 04)	만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	-	-	1,094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2004. 11. 01)	-	-	-	-
	인재육성기금 지원에 관한조례 (2003. 4. 16)	-	-	-	-
남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2006. 08. 07)	만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	-	-	2,553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2004. 09. 18)	-	-	-	-
	향토장학회지원에 관한조례 (2003.12.13)	-	-	-	-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하동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2005. 12. 20)	놀이시설	놀이시설 1세트	청암초 병설유치원	5,000
		만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	-	-	1,727
	학교급식비지원 조례 (2004. 08. 13)	-	-	-	-
	인재육성장학재단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2003. 1. 9)	-	-	-	-
산청	향토장학회육성 조례 (2000. 1. 17)	-	-	-	-
	-	환경개선	교실환경 개선 1세트	산청초 병설유치원	80,000
함양		만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	-	-	247
		만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	-	-	3,917
	장학회육성조례 (2002. 1. 8)	-	-	-	-
	인재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 (2005. 4. 13)	-	-	-	-
거창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2005. 09. 14)	프로그램 구입	평생교육 프로그램 1세트	거창유치원(공립)	519
		만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	-	-	7,753
	학교급식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2004. 10. 13)	-	-	-	-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 관한조례 (2005. 9. 14)	-	-	-	-
합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2006. 10. 25 입법예고)	만4세 셋째아 이후 유아교육비 지원	-	-	7,173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조례 (2005. 08. 11)	-	-	-	-
	향토인재육성조례 (1998. 5. 30)	-	-	-	-
계					1,253,925

제주도(2006)

	근거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대상 수	지원액(천원)
제주시	-	유치원놀이장 고무블럭설치	고무블럭 설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개원	67,000
	-	잔디운동장 정비사업	잔디운동장 정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원	2,500
	-	운동장마사토 및 체육시설설치	마사토 및 체육시설 설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원	100,000
서귀포시	-	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원당 5,000,000원	사립유치원 4개원	20,000
계					189,500

<부록 2> 교육경비조례 및 유아교육지원 조례(예)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5891호 일부개정 1998. 09. 17.

대통령령 제17025호 일부개정 2000. 12. 27.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9·17]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본호신설 2000.12.27.]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2·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 (보조의 신청등) 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4.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7.]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2006.07.19 조례 제4405호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사업
3.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
4.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5. 기타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규모 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 전출금의 규모는 당해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15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전출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전출한다.

제6조 (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지원하는 교육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자치구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해당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지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목적외 사용금지)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9조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①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학교를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금 사용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

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지원사업 선정
- 2.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 3. 교육지원사업 평가
-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경영기획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위촉직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관련위원회 시의원 2 인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 2. 당연직위원 : 시의 청소년 관련 담당국장·정책기획관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교육지원국장으로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교육실무협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시와 교육청간의 교육정책에 관한 실무협의
-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
- 3. 기타 위원장(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시의 정책기획관과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③실무협의회는 위원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시·교육청의 관련부서의 담당과장(담당관)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협력관으로 구성한다

④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0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교육 실무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실무협의회로 본다.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제정 200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 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농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2.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 사업
3.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인재 육성 사업
4. 과학 및 영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교육복지 증진사업
7. 지식기반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교육지원사업협의회 구성·운영)①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지원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및제2항의 사업계획과 관련된 교육지원사업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결과에 대한 평가 등
- ③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6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④의장은 도의 행정(1)부지사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이하 이 조에서 "부교육감"이라 한다)이 공동의장으로 된다.
- ⑤당연직 위원은 도의 기획관리실장·문화관광국장과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교육국

장이 된다.

⑥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그 인원중 2분의 1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⑦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감과 협의한 후 제4조에 따른 협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단기 또는 중·장기 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지원사업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 편성 이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이 사군의 재정보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예산의 편성) ①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관련 예산 편성현황과 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편성한다

제7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등) ①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의 추진실적 및 관련 자료를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등의 위탁) ①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협력관의 파견) ①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교육협력관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지원사업의 계획수립·집행의 지원
2. 교육청 및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3. 기타 교육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교육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006. 11.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충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당해 각급학교의 장에게 그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
3.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교육지원사업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3. 원어민 외국어교사 배치확대 등 국제경쟁력 제고사업
4.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기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예산 지원) ①도지사는 제3조에 의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산지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다.

제6조(소요경비의 부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시·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해당 시장·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지원사업 선정
2. 지원규모 및 방법

3. 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반영
4.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의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도의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인과 교육계·인문계 종사자, 학부모 등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그 인원중 2분의 1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③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도지사는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 도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05. 16 조례 제695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 조제 항 및 제7 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2 조 및 제33 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의 사립유치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립유치원"이라 함은 법 제7 조제3 호 및 제8 조에 의해 법인 또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의 범위) ①구청장은 사립유치원등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교재·교구비
3. 기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 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대전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지원대상) 구 관내에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심의위원회) 사립유치원등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사립유치원 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3.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유치원등 경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비지원 신청사업의 심의
2.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경비지원사업의 적정여부
4. 경비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경비지원 신청사업 결과보고 심의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

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의 의무)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형감독) ①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정 1997.01.10 조례 제353호
 개정 2001.06.29 조례 제509호
 개정 2005.07.08 조례 제620호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제6항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1.6.29>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 과 같다

1. 급식시설·설비 사업 <개정 2005.7.8>
2.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5. 교육정보화 사업 <신설 2005.7.8>
6.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구입 사업 <신설 2005.7.8>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3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3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2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등의 임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 주관과장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기준 심의 <개정 2005.7.8>
- ②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심의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3.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③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는 정기 예산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 3. 심의사항 및 결과
-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보조의 신청등)

①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이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 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4. 보조사업의 효과
- 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3> 보육조례(예)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 1999.05.10 조례 제3598호 (제정)
- 2001.07.16 조례 제3891호 (개정)
- 2005.09.30 조례 제4306호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9.30)

제1조의2(정의) [본조신설 2005.0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라 함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

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개정 2005.09.30)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개정2005.09.30)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서울특별시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09.30)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09.30)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전문가(개정 2005.09.30)
 2. 보육시설의 장 및 교육교사 대표(개정 2005.09.30)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개정 2005.09.30)
 4. 관계공무원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개정 2005.09.30)
 6. 삭제(2005.09.30)
 7. 삭제(2005.09.30)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05.09.30)

제5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5.09.30)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5.09.30)
3.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5.09.30)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5.09.30)
5.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5.09.30)
6. 보수교육의 실시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5.09.30)
7.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5.09.30)

8. 기타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05.09.30)

제6조(위원의 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1.07.16, 2005.09.30)
- ②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5.09.30)

제6조의2(해촉) (신설 2001.07.16)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1.07.16)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01.07.16)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1.07.16)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07.16)
-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신설 2001.07.16)

제8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1.07.16)
-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1.07.16)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07.16)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1.07.16)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

제10조(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09.30)
-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09.30)

제11조(설치기준)

- 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5.09.30)
- ② 삭제(2005.09.30)

제12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개정 2005.09.30)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개정 2005.09.30)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개정 2005.09.30)
4. 보육시설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개정 2005.09.30)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개정 2005.09.30)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개정 2005.09.30)
7.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신설 2005.09.30)
8. 시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신설 2005.09.30)
9. 기타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5.09.30)

제13조(구성)

-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

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05.09.30)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의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05.09.30)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기타 종사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09.30)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삭제(2005.09.30)

⑥ 삭제(2005.09.30)

제13조의2(지도·감독)[본조신설 2005.09.30]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본조개정 2005.09.30]

①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보육정보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보육정보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제4장 방과 후 보육

제15조(보육시설의 설치)

시는 방과 후 보육시설을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5.09.30)

제16조(보육시설 기준)

방과 후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및 제23조에 의한다.(개정 2005.09.30)

제17조(교육훈련)

시장은 방과 후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비 용

제18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5.09.30)

1. 보육시설의 설치 및 증개축 보수비(개정 2005.09.30)
2. 보육교사 인건비(개정 2005.09.30)
3. 교재·교구비(개정 2005.09.30)
4.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비(개정 2005.09.30)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용(개정 2005.09.30)
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비용(개정 2005.09.30)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개정 2005.09.30)
8. 기타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05.09.30)

② 시장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이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개정 2005.09.30)

시장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 2. 사업의 목적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

제6장 보 칙

제20조(교육)

시장은 보육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09.30)

제21조(시설의 평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모범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서울특별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경기도 보육조례

<개정 2005.6.1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3>

제2조 (책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위원회

제3조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경기도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6.13>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및 아동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도의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사 교육원의 등록금 수납에 관한 사항
6.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의 중장기 보육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8. 기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 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6.13>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의회의원
2.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 전문가

3.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4. 보호자 대표
 5. 도 보육담당국장 및 관계공무원
-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도지사가 도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05.6.13>

제7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

제11조 (설치 및 운영) ①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제공, 상담, 또한 종사자들의 취업정보를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보육관련 단체·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5.6.13>

제12조 (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6.13 >

제13조 (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의 알선
3. 보육대상자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4. 보육교사의 취업정보 제공
5.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열람
6.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7. 도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8. 보육관련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9. 기타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 및 기타 필요 인원을 둔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다만,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운영요원은 수탁자가 정보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④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6.13>

⑤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지도원,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고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건강, 영양관리 등을 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보육시설등 소규모 시설에 우선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보육정보센터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 조언기능을 갖는 운영위원회를 보육관련단체, 보육전문가, 학부모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15조 (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로 한다.

제4장 보육계획 및 교육훈련

제16조 (보육계획) 도지사는 보육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보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7조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도는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을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방과후 보육시설 기준)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22조에 의한다. 다만, 시설종사자는 방과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훈련) ①도지사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전문교육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우수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방과후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비 용

제20조 (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과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개정2005.6.1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급식비 지원 <개정 2005.6.13>
3.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의한 교육훈련비 < 개정 2005.6.13>
4. 영아장애아시간연장·방과후·휴일보육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5. 교재 교구비
6.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경비
7. 평가인증시설지원
8.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9. 기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1조 (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도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시장·군수를 통하여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장 보 칙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조례 시행일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경기도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이루어진 보육정보센터에 관한사항(위탁, 종사자 임명, 운영위

원회 구성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되, 임기 및 위탁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05.6.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종전 규정에 의한 경기도보육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거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